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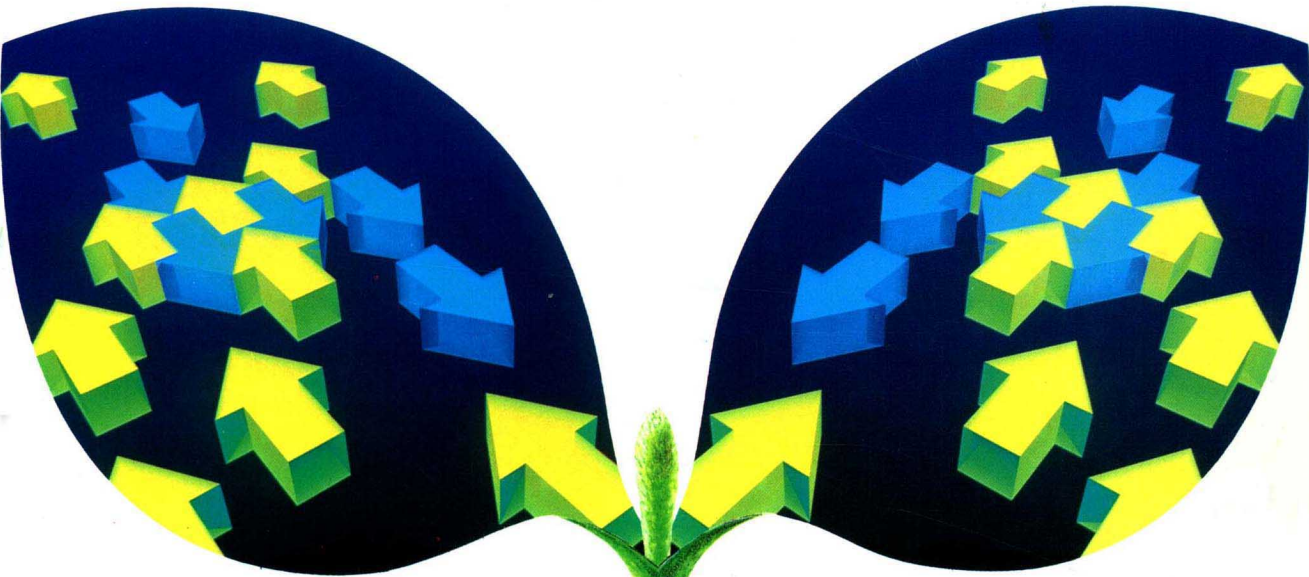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1996. 4



특집 /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경제정책해설 / 금융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개편
「96民資誘致기본계획」을 확정·고시

이 달의 초점 / 올해 임금인상, 어느 선이 적정한가

유토피아 사상의 元祖

토마스 모어 (1478~1535)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1478년 당시 문명 사회의 변방이었던 영국에서 판사인 존 모어 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여의자 그의 아버지는 세 명의 계모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모어는 어두운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다.

13세가 되던 해에 모어는 존 모턴 대주교의 시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출세의 시작이 되었다. 모어의 영특함을 알아차린 모턴 대주교는 그를 옥스퍼드 대학교에 보냈고, 모어는 그곳에서 새로이 태동하는 문예부흥의 인본주의적 사조에 접하는 한편 많은 지식인들과 친교를 맺게 되었다. 1499년부터 1503년까지는 카르티시아 승정의 제자로 있으면서 에라스무스를 만나 지적인 친교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미 그동안 변호사 자격을 얻은 모어는 1504년 영국 의회에 진출하여 당시 헨리7세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하는 데에 노력하였고, 1510년에는 런던 시의 부감찰관(undersheriff)이 되었다. 1516년에는 지금의 벨기에의 일부인 프랑데스의 영국 대사로 나가 있으면서 그 유명한 「유토피아」를 라틴어로 출판하였다. 1518년에는 귀국하여 추밀원 의원에 임명되었으며 1523년에는 당시 토마스 울시 대주교의 추천으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529년 울시가 수상직에서 실각하자 모어는 평신도로서는 최초로 수상직을 맡게 되었다.

모어는 당시 포인 헨리8세와 정견의 차이로 대립하던 중 마침내 영국 왕권이 로마 교황의 권한에 앞설 수 없다는 주장을 펴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1535년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모어는 死後인 1886년에 가톨릭교회의 福者로 서품되었고 다시 그가 사망한 지 400년 만인 1935년에는 聖人の 자리에 올랐다.

유럽 중세사회를 서서히 해체시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자유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십자군의 원정이라든지, 흑사병과 같은 역사적인 史實이 없었더라도 부패한 교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는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가톨릭 내부에서의 고행과 청빈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언제나 자유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

모어는 성직자는 아니었으나 독실한 가톨릭교인이면서 또한 정치인으로, 철학자요 사상가로서 중세말과 근세초의 과도기에 사회적 갈등을 은유적인 저술을 통하여 해소시키려 한 선각자였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토지였던 만큼, 토지의 일방적이고도 집중적인 소유는 비생산적이고 기생적인 지주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농노나 또는 소작인 계층은 핍박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세말 敎父철학자들은 신이 토지를 창조하였을 때에는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또한 함께 활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믿어,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가 일부 계층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소유되는 것은 신의 계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토지의 공개념사상은 이미 이때부터 싹텄다고 볼 수 있다.

모어의 사회경제사상은 「유토피아」에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유토피아는 원래 ‘없는 섬’이라는 뜻으로, 헨리8세의 大使로 나가 있던 모어가 피터 가일스라는 사람의 정원에서 얻어들은 가상적인 이야기를 저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선원으로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탐험에 동행한 라파엘 히들로데이가 유토피우스 왕이 세운 섬나라인 유토피아를 만나게

되면서 내용은 전개된다.

「리처드3세」라는 역사서를 저술하기도 한 모어는 훌륭한 왕이었던 에드워드4세의 아들 둘을 죽이고 임금이 된 리처드3세의 영국과 유토피아를 비교하면서 유토피아의 理想國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치체제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학식과 덕망으로 높이 칭송되는 소위 ‘최적인’ 만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세습이나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 민주주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모든 토지는 공동체 소유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지주와 농노 계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地代와 같은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유토피아의 모든 시민은 누구나 노동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소득 또한 노동소득밖에는 존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의 원초적 형태가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물론 노동에는 힘들고 위험한 노동과 안락하고 쉬운 노동이 있으므로 이러한 두 종류 사이의 노동은 교대로 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도 남녀의 구별이 없

이 모두 균등하게 이루어져 교육의 차이 때문에 남녀나 또는 사회 계층간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다. 사회적으로는 금과 같은 귀금속을 아주 천시하는 풍조를 일으켜, 금은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구슬이나 장난감이 아니면 요강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어는 비록 은유적으로 우화 속의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구상하였으나, 사실은 당시의 모순된 사회경제적 제도와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이 전개될 사회주의 사상의 초석을 놓았던 것이다. **윤석범**

토머스 모어의 사회경제사상은 「유토피아」라는 저술에 농축되어 있다. 그는 유토피아라는 假想國을 통해 당시의 모순된 사회경제적 제도와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유토피아」는 王權이 세습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공직을 맡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토지를 공동체의 소유로 하는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를 理想鄉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라경제

역사 속의 경제사상가 40

유토피아 사상의 元祖 - 토마스 모어 / 윤석범 · 연세대 교수	2
-------------------------------------	---

권두칼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 이경식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은행 총재	6
--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재정경제원 국고국

나라 안살림을 꾸리는 살림꾼들 / 최창환 · 서울경제신문 기자	10
------------------------------------	----

특집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다진다 / 서만식 · 노동부	16
---------------------------------	----

최근 경제동향과 임금안정대책 / 김기진 · 재정경제원	20
-------------------------------	----

임금수준과 기업경쟁력 / 전상우 · 통상산업부	24
---------------------------	----

임금제도의 발전방향 / 이 선 · 한국노동연구원	27
----------------------------	----

선진국에서의 임금교섭의 신조류 / 이종훈 · 명지대 교수	30
---------------------------------	----

기업정보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 김상준 · 공정거래위원회	33
---------------------------------------	----

나라경제 초대석

한국의 ‘세계화’와 일본의 ‘세계화’ / 박우희 · 서울대 교수	36
-------------------------------------	----

건강한 삶을 위하여 황달 / 김영철 · 고려대 교수	38
------------------------------	----

이 달의 초점 - 올해 임금인상, 어느 선이 적정한가

올해 임금인상률은 12.2%가 적정 / 김종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0
---------------------------------------	----

올해 임금인상률은 4.8%가 적정 / 김정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43
-------------------------------------	----

책과의 만남 「단일세율제도(The Flat Tax)」 / 김탄일 · 재정경제원	46
---	----

만남

정종택 환경부장관 / 박정희 · 행정쇄신위원회 환경위원	47
--------------------------------	----

금융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개편 /이종갑 · 재정경제원	52
비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서종호 · 농림수산부	56
「96民資誘致기본계획」을 확정 · 고시 /김성진 · 재정경제원	59
95~2010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김영준 · 통상산업부	64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방향 /공종렬 · 정보통신부	68
쓰레기종량제의 내실화 /신현국 · 환경부	72
식품산업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도입 /김진수 · 보건복지부	76
沿岸域 통합관리체제의 구축 /이석암 · 건설교통부	80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방향 /김영식 · 과학기술처	85

출입기자코너

· 공무원과 기자 /조호연 · 경향신문 기자	90
· 지방화시대의 사고방식 /김상철 · 한국경제신문 기자	91

경제수상

· 중소기업과 손잡고 뛰는 대기업 /김원배 · 노동부	92
· 비전과 조화 속의 과학기술 /장문호 · 과학기술처	93
· 시간과의 경쟁 /이동욱 · 공정거래위원회	94
· 통계와 합리성 /송태준 · 통계청	96

경제동향 나라밖 : 러시아 경제개혁의 明暗 /김예기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97
--	----

규제완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완화 /심경우 · 노동부	100
--------------------------	-----

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와 사회

우리나라 광공업활동의 현황 및 구조변화 /한성찬 · 통계청	102
----------------------------------	-----

생활경제상담실 종합소득세 /김연근 · 국세청	106
--------------------------	-----

忙中有閑 민물낚시 /이춘근 · 낚시연합회	108
------------------------	-----

국민경제 의식조사	109
-----------	-----

경제부처발간자료 안내 주요 경제정책자료	113
-----------------------	-----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이 경 식

前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은행 총재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과거 일찍이 없었던 급속한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다.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곧 경제정책의 목표나 수단도 종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새로운 경제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앞으로 경제정책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초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높은 성장을 거듭하여 이미 80년대 중반에 대표적인 신흥공업국가의 일원으로 부상한 데 이어 90년대 중반인 오늘에 와서는 OECD 가입이 성사단계에 이르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운영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시장메커니즘에 깊숙이 간여하는 정부주도형이라는 점인데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이 주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대외경제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8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수출 신장과 해외기술의 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도 지금과 같이 치열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아무리 수출을 독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별 문제가 되

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배경으로 외국의 표준화된 기술을 손쉽게 도입하여 비교적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이를 선진국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초기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작고 그 구조 또한 단순하였기 때문에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총수요의 크기를 조절하기만 하면 성장·고용·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를 큰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경제환경은 개발연대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90년대 접어들면서 생산요소, 특히 노동의 가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전략의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경제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구사한다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특히 기술보호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이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양질의 풍부한 노동



“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기능이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의 창의력과 혁신노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질서와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래의 규제자 기능에서 벗어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심판자 기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

력을 활용하여 급속한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후발개도국의 추격이라는 이중부담을 견뎌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여건의 가변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생산요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능력이 저하된 상황 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거시경제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배분과 민간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간여하는 경제운용방식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총량목표 추구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이상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연히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이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최종목표의 달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퇴색된 상황하에서는 자본이나 물적자원의 이용가능성이 국가간에 평준화될 것이므로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이들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한 나라의 경쟁우위는 국제이동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생산요소,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행정·경제·사회제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학·기술·문화 등 광의의 생산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특히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의 생산성이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기능이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가

의 창의력과 혁신노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질서와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래의 규제자 기능에서 벗어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심판자 기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이 시장원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운용체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 부문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으며 과거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하부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산요소의 질을 높이려면 인플레이션대심리의 불식을 통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프리미엄(premium)체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때 비로소 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패는 정부가 기업의 창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권재**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 재정경제원 국고국 —



나라 안살림을 꾸리는 살림꾼들

재정경제원 국고국은
정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등
나라 안살림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혜로운 주부가 평화로운 가정의 초석이듯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국고자금과 국유재산을 빈틈없이 관리운용하는
이들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다.

글 · 최창환 / 객원기자(서울경제신문 기자)

최

근 서울 지역에 있는 몇곳의 금융기관 영업점 직원들과 전산실 직원들은 전혀 예기치 않은 손님을 맞아 잠시 긴장했다.

韓澤洙 국고국장 등 재정경제원 국고국 직원들이 방문해 세금을 어떻게 받고 전산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국고수납 및 집행과 이에 관련된 전산처리요령을 시시콜콜 파악했기 때문이다.

“왜 왔을까?” 눈을 크게 뜨고 있던 금융기관 직원들은 韓국장 등의 방문목적이 국고전산화를 위한 준비작업임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韓국장 일행은 일선 세무서와 한 국은행도 같은 목적으로 방문했다.

“나라살림도 이제는 주먹구구 식으로는 안되고 생산성 향상이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수입과 지출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리얼타임으로 파악해 국가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라의 안살림을 담당하는 國庫局을 이끌고 있는 韓국장의 의욕에 찬 첫마디다.

國庫局이 변신의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국고국은 정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국유채산을 관리하는 곳이다. 정부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조달, 관리하면서 정부 각 부처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연간 104조원의 자금을 집행하고 총 118조원 규모의 국유채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통화관리와 자본거래 규제를 통한 환율정책 등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모두 148조원(96년 36개 기금 포함)에 달하는 재정이 경기조절 등의 중책을 분담해야 한다.



나용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감사원 감사위원과 함께 9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96. 3. 9 과천제2청사 재정경제원장관 집무실)

등 큰 살림을 맡아 지키다 보니 국고국은 다소 보수적이라는 인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나라의 곳간지기’ 또는 ‘종가집 안방마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전래의 주부상을 떠나 지금은 ‘홈오토메이션’(국고전산화)으로 무장한 신세대주부로서 화려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실이 벌어들여 주는 돈을 장부에 넣어놓고 예산실에서 계획한 대로 각 부처가 잘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통해 관리하던 것을 컴퓨터를 통해 국고수납 및 집행상황을 한눈에 파악, ‘장부’에 묻어 두는 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고국의 변신은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금융 및 조달시장의 개방, 자율화 등 달라진 내외환경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국고국 직원들의 의지가 조화를 이룬 합작품이다.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자율화는 핵심 정책수단이던 금융정책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그동안 세출기능에 국한돼 온 정부재정에 대해 적극적인 경기조절기능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통화관리와 자본거래 규제를 통한 환율정책 등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모두 148조원(96년 36

개 기금 포함)에 달하는 재정이 경
기조절 등의 중책을 분담해야 한다
는 것이다.

재정규모가 날로 커지고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개방
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고
자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국고국의 절묘한 인적 구성은 세
로운 기능의 분담을 손쉽게 하고 있
다. 국고국은 韓澤洙국장을 정점으
로 ▲국고과 ▲국유재산과 ▲재정
투융자과 ▲회계총괄과 등 4개課
에 여직원을 포함해 총 64명의 단
출한 식구로 구성돼 있고, 「예산회
계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 27개에
달하는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韓국장은 서울상대 재학중 행시
11회에 합격해 관직에 입문한 재무
부 이재국 출신의 금융통으로 컴퓨
터에 관한 한 도사로 통한다. 중소
금융과장, 은행과장, 외환정책과장
등 이재국 전성기 때 주요 과장을
역임했으며 駐日 재무관과 관세심
의관을 거쳤다.

韓국장은 주일 재무관 시절 자료
수집을 위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
기 시작한 뒤 지금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컴퓨터와 함께 하는 컴퓨터
매니아다. 컴퓨터와 같이 있는 시간
이 하도 많아 부인 鄭璟娵씨(홍익대
미대 교수)가 “남편에게 애인(컴퓨
터)이 생겼다”고 질투(?)할 정도다.

지난해 관세심의관 재직시에는
직접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육시
키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
해 각종 관세율 및 무역관련정보를
입력하여 관세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했다.

금융과 컴퓨터에 정통한 韓국장
의 경력은 국고전산화와 이를 통한
재정기능 확대라는 국고국의 당면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국고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고과 姜權錫과장
(행시 14회, 연세대 정법대)도 자금
시장과장, 증권발행과장, 보험제도
담당관 등을 역임한 금융통으로 韓
국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국고과는 재정자금의 조달과 관
리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국고
자금 집행, 국고여유자금 운용, 세
계잉여금 처리, 국채발행 한은차입,
공공차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자금이 국고과를 거쳐 집행되고 연
간 9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지난해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발행을
대폭 늘려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姜과장은 '앞으로 통화관리방식
이 통안채 배정 등 직접관리방식에서
국채매매조작 등을 통한 간접관
리방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비,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중' 이
라고 말했다.

또 국고전산화를 조기에 완료,
세입과 세출현황을 리얼타임으로
파악, 국고여유자금을 단기적으로
금융권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유자금의 활용
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려 국고를 건
실화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과(朴吉浩과장)는 국유
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국유재

산관리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공기
업민영화, 정부소유 주식의 처분 등
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이 많고 증시에서도 항상 주목하는
곳이다.

朴과장은 요즘 심기가 편치 못하
다. 증시침체로 한국통신 상장 및
공기업민영화계획이 여의치 않고
국유지 불하 및 사용 등을 둘러싼
민원이 선거철을 맞아 폭증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넉넉한 성품과 소리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솜씨로 항상 웃
음을 잃지 않고 말끔하게 일을 마무
리하고 있다. 고려대 상대를 나와
행시 15회로 관직에 입문한 朴과장
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물가국, 공
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등 기
획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유재산과는 국유지보존 위주의
기존정책을 수정, 최근 국유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국유
지활용대책을 강구중이다. 또 올해
중 제2차 국유지신탁조사를 완료,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재정투융자과는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 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
담배·인삼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
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공공자금관리
기금은 매년 규모가 급증,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재정투융자재원의 조
달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출신으로 장관비서관, 중
소금융과장, 손해보험과장 등을 거
친 金裕盛 재정투융자과장(성균관

대 법대)은 세련된 매너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는 韓·美 담배협상에서 담배양허록상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장기투자로 증시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률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여기서 나왔다.

회계총괄과(孫 弘과장)는 정부회계 및 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회계 및 계약제도는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조달 등 민간의 금전적인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련된 민원도 폭주하고 있어 한치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회계총괄과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孫과장의 막힘없는 유머감각이 째짤이 웃음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의 孫과장은 행시 15회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관리과장, 행정보사에 산담당관, 보사노동예산담당관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孫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 결산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통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회계업무가 합리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회계총괄과는 또 97년으로 예정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국내기업의 외국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뒤 이질적인 문화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한지붕 두가족이란 지적을 받았던 재경원의 어려움



특유의 단합력과 드높은 사기로 단단히 무장한 국고국 전직원은 국고자금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가진 소백산 등반대회 모습)

은 국고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무부 출신과 경제기획원 출신과장이 각각 2명씩 4개課를 분담하고 있고 孫과장의 예에서 보듯 기존 업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는 등 부서통폐합의 시너지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고국은 지난해 예산실·세제실·금융실 등 거대실국들을 물리치고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재경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 직원들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국고국이 준우승을 차지한 이유라고 姜權錫과장은 설명한다.

국고국 직원들은 요즘은 사기가 매우 높다. 행정에 자발적으로 생산

성 개념을 도입, 단순한 살림꾼에서 첨단행정의 첩병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다짐이 다부지다.

국고국은 지난 2월 25일 소백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韓國장 부임 이후 국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64명의 직원 중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54명이 모두 참석, 끈끈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했다.

특유의 단합력과 드높은 사기로 무장한 국고국의 행보를 주목할 만하다.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다진다

올

해의 임금교섭철이 다가왔다.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에 이어 경영계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노총은 12.2%의 임금인상(民勞總은 14.8%)을 요구하였고, 경총은 4.8%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구와 제시수준만 본다면 올해 임금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학계 등 공익대표와 협력하여 노사단체의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모색하고 勞使 동반 성장의 임금·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의場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사단체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사간 서로 처한 입장에는 그만큼 큰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도 그간 되풀이해 온 임금교섭을 둘러싼 낭비가 재연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임금교섭을 둘러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세계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할 것



서만식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

없이 경쟁력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다운사이징·벤치마킹 등 최근 즐겨 사용하는 어휘 하나하나가 경쟁력강화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강화는 생산성 향상 곧, 비용의 절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바로 봄철 임금교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봄철 임금교섭의 원만한 추진을 바탕으로 한 산업사회의 확고한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새로운 노사관계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봄철 원만한 임금교섭이 향후 노사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다져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사간 대립과 갈등의 해소에 노동정책의 주안점 뒤

지난해는 '노사협력선언'이 확산되고 '노사공동발전선언문'이 발표되었는가 하면 勞·使·政이 해야 할 일을 합의하는 등 노사동반자 인식의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금년에도 이러한 노사협력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원만한 임금타결을 마무리하였고 창원지역에서는 노사화합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의 하강국면 진입, '비자금 논란', 총선 등 유념해야 할 환경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단협 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장이 많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의 새로운 노사관계 '가능성'을 이어가면서 올해의 원만한 임·단협 교섭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노사협력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여는 데 힘을 모

아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노동정책은 대립과 갈등의 10년을 마무리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여는 데 노동행정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원만한 임금교섭 촉진 그리고 근로복지 증진에 두고 있다.

노사관계진단 지원사업 적극 추진

기업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노사관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모색해야 하나 대부분의 개별기업에서는 노무관리와 노사관계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노사관계 실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 개선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 진단사업은 노사 스스로가 기업내 근로자 처우, 인사·노무관리, 의사소통 및 조직문화 등 노사관계의 실상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노사관계진단표 개발에서부터 출발한다.

노사관계진단표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노사관계진단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 5개 부문 10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별기업에서 진단표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개선안의 수립에 관한 자

기업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노사관계를 근원적으로 개선, 적극적으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을 요청하는 경우 노사관계진단센터에서 서면검토에 의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밀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노사관계진단센터의 진단전문가단을 통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을 자문받을 수도 있다.

노사관계진단센터에는 학계의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공인노무사 등 모두 180여명으로 노사관계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 진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노사관계 안정과 노사협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勞·使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진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아울러 정밀진단 요청시 전문가단에서 성의 있는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대

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원만한 임금교섭을 적극 지원

임금교섭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조정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교섭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별 임금교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합리적인 교섭준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섭준거는 중앙 단위의 노사단체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노·사단체가 요구하는 임금인상 요구는 그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산정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기업에서 임금교섭시 준거로 삼는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인상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금인상준거를 제시하고 권고하게 되었다.

금년의 임금인상 준거는 별도로 적정임금 인상률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96년 1월 8일 학계가 주축이 된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案이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상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案이라



95년 3월 16일에 열린 현대전자·현대건설 노사화합 결의대회

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권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인상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적정협약 임금인상률 6.6%, 범위를 5.1~8.1%(추가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금 112만원 이상 사업장은 5.1~6.6%, 112만원 미만 사업장은 6.6~8.1%)를 정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高賃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5.1% 내외에서 자제하고 보육시설 등 근로복지의 확충과 협력업체 지

원에 활용토록 권장하였다.

셋째,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직무·직능급제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넷째, 합리적인 임금교섭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영성과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임금협약만료일 이전에 협상을 개시하여 가능한 한 교섭기간의 단축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에 대하여 정부의 임금인상 권고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시로 설명하여 노·사가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등 임금협상이 조기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금년도 임금인

상을 최대한 자제하되 보육시설 등 근로복지증진에 노력토록 유도하면서 협력업체의 노사관계 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조정,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근로복지의 내실화 추구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에 전념하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근로복지를 내실화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복지기획단의 국민복지 기본구상

(안)과 연계하여 생산적인 복지기반의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시설 설치·개보수 자금 융자, 근로자 의료비 융자(1인당 500만원 한도),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1천억원) 등은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 시책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기업이 자체 복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문화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産災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예방선진화 3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재예방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산재예방선진화기획단에서는 재래형 반복재해 근절,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전개를 위한 노사의 참여와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

앞으로 노동행정을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를 감안 지난해부터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많

임금교섭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조정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교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근본취지는 근로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서비스 자세를 갖추자는 데 있다. 지난해 실시된 '노사한마당' 행사 개최(95.12.12),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95.9.10 포항공단)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올해에도 노동행정 공무원의 인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국근로감독관 연찬회를 3월중에 2회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社歌 만들기' 캠페인, 일터에서 부를 수 있는 창작 가요제인 '우리 가요제' 등 근로자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올 임금교섭을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그동안 우리는 30여년의 압축성장으로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였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의식·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더구나 올해는 87년 6월 29일 이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표출된 지 만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변화에 변화가 거듭되는 여건 속에서 노사갈등 10년이면 우리로서는 충분한 경험이다. 이제 우리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나갈 시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올 봄의 임금교섭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됨으로써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보람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는 인간존중, 근로자 만족의 투명한 열린 경영을 통하여 노사가 호흡을 같이하는 풍토를 스스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도 노동운동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면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해가 대립하기 마련인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최적의 타협점을 도출하는 데 학계나 언론의 역할도 요청된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최근 경제동향과 임금안정대책

지

난해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속에 9%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수출이 1,200억달러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도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비하여 금년도 경제운영여건은 작년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호황국면에서 안정적 조정국면으로 전환 예상

올해 국내경제는 그동안의 호황국면에서 안정적 조정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작년에 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돌이켜 보면, 70년대 이후 호황국면에서 下降局面으로의 전환이 순조로웠던 예는 거의 없었다. 즉, 고성장 국면에서 경기과열로 발생하였던 거품현상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호황국면에서는 물가·금리·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과열의 징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올해에는 세계경제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



김기진
재정경제원 인력기술과 서기관

기연착륙(soft landing)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기양극화 문제와 중소기업 경영난 등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95년 4/4분기부터 생산·투자·소비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년에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해 왔다. 작년말까지 산업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투자 및 소비 관련 지표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 산업생산증가율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다시 높아지고, 실업률도 여전히 완전고

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2월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이 20%를 상회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비록 1~2월중의 단기실적이긴 하나 이와 같은 최근의 경기동향을 종합해 볼 때, 7~7.5%의 금년도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져 경기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물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총수요의 안정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이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이례적으로 안정되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가능성, 해외자본 유입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 총선 등의 불안요인도 잠재해 있다. 1~2월중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하여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중으로는 4.5% 이내에서의 역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WTO체제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개방압력이 경제 각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가간 경쟁의 준칙이 동일한 기준으로 수립되고,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와 기업들의 유출입이 자유로

위험에 따라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공공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임금수준 및 근로자 생산성 등 비교역 부문의 효율성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임금안정의 바탕 위에서 가능

이러한 경제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금년도 경제운영방향은 물가안정 바탕 위에 경제활력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이들을 이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임금의 안정이다.

경제활동인구가 2천만명을 넘어 서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은 거의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항이라 하겠다. 87년 노조활동 이후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경영자측과 근로자 간에 서로 다른 인상을 제시하고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도 상이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빈발하여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한편, 정부로서도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이 국가경쟁력 확보나 사회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여겨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임금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은 노사자율에 맡겨

정부의 임금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즉,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교섭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나 중소기업 경영개선 등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방지·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는 임금인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87년

노조활동이 활성화된 이후 노조측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상승률이 두자리 수로 급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분규가 일어나 일부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주요 경쟁국의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상승으로 명목임금의 절대수준에 있어 선진국이나 경쟁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고, 대만 보다는 임금수준이 오히려 높아졌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 규모를 감안한 임금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여타 경쟁국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최근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대기업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임금인상에 따른 초과비용을 제품가격으로 전가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납품단가를 삭감하거나 인상을 억제하여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압박과 인력난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제는 생

〈표 1〉 최근의 경제지표

	(단위: %)					
	95년 1/4	2/4	3/4	4/4	12월	96년 1월
산업생산	14.4	12.4	13.2	8.4	7.1	12.4
도소매판매	8.7	7.8	7.3	7.4	8.7	5.3
국내기계수주	45.4	26.6	0.9	-1.5	-11.4	34.3
제조업평균가동률	83.5	82.3	82.3	81.2	80.5	82.2
실업률(계절조정)	2.1	2.0	2.0	2.0	1.9	1.9

산성 항상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93년과 94년에는 한국노동자총연맹(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임금인상 및 주요 노동정책·제도개선에 관하여 합의의 함에 따라 개별기업은 이를 임금교섭의 준거로 삼았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금년도 노총과 경총이 임금인상률 등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임금인상률(노총:12.2%, 경총:4.8%)을 제시하였다.

노총과 경총이 각각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산정근거도 생계비 중심(노총안) 또는 기업의 지불능력 중심(경총안)으로 치우쳐 있어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교섭 준거로 활용하는 데 혼란과 노사대립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적정임금인상률로 6.6%를 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임금교섭 준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사 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경제노동생산성 모델에 따라 산출 제시한 6.6%(인상범위:5.1~8.1%)를 적정 협약임금인상률로 권고하였다.

월평균임금이 112만원(95년도 월평균임금 123만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 미만인 기업은 6.6~8.1% 범위내에서, 월평균임금이 112만원 이상인 기업은 5.1~6.6% 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경우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승급분 등 임금교섭에 의하지 않고 자동조정되는 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심화되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임금 수준의 대기업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추가적인 임금인상 여력이 있을 경우 명목임금 인상보다는 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과 산업안전시설의 확충,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의 확대, 주택자금 지원 등 복지제도의 확충과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방식의 개선, 소속 근로자 교육·훈련사업의 지원 등에 활용토록 권장해 나갈 것이다.

〈표 2〉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84~87 평균	88~90 평균	91~93 평균	94년	95년
전 산업	9.1	18.5	15.0	12.7	11.2
제조업	9.7	21.6	14.5	15.5	9.9

〈표 3〉제조업 임금수준 국제비교(93년)

(단위:달러)

	1인당 국민소득(A)	월평균임금(B)	소득대비 임금수준 [(B×12)÷A]
한국	7,513	1,103	1.76
미국	24,643	2,111	1.03
일본	34,103	3,340	1.18
대만	10,512	1,092	1.25
싱가포르	19,458	1,126	0.69
독일	22,239	2,431	1.31
프랑스	21,550	1,495	0.83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위해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유도

현행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임금교섭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경우 전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0% 수준에 불과하여 임금교섭이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타결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상여금·수당 등의 인상률에 따라 총액기준 임금인상률은 협약임금 인상률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협약인상률과 실제인상률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데 주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현행 임금체제는 생산성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금체제가 개별기업의 생산성이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연공급체제로 되어 있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공헌도를 반영하는 데에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영 성과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동종 경쟁기업이나 인근 소재 기업의 인상률이 협상의 준거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등 합리적인 임금교섭관행의 정착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 임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연공급 임금체제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의 특성 등 직능급·직무급적 요소가 보완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통폐합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등 임금체제를 단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의 임금체제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임금결정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며, 성과배분제도가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의 안정적 운용, 유통구조 혁신 등 물가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택자금의 지원,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 고용보험제도의 충실한 운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 및 복지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근로자의 실질소득 및 복지수준 향상을 적극 도모

정부는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의 안정적 운용, 유통구조 혁신 등 물가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생필품 등 생활물가의 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물가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자금의 지원,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 고용보험제도의 충실한 운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 및 복지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최근 몇년간 이맘때면 정부의 임금안정대책이 발표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매년 나오는 의례적인 대책일 뿐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기업을 돕기 위한 논리로 일축해 버리는 시각도 있다.

과거 60~70년대 경제개발시기에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낮은 기술수준하에서 저임을 바탕으로 값싼 물건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내놓아 수출을 늘리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저임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최근의 임금안정시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WTO체제의 본격 작동과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등 급진전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이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에 있어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독과점 형태가 목인되고, 무역장벽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가 용인되던 여건하에서는 임금안정이 결과적으로 기업가의 이익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초과비용을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안이한 기업경영방식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사가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조적·생산적 관계를 정립하는 길만이 치열한 국제경쟁하에서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사, 특히 대기업 노사의 선도적인 역할로 임금의 안정적 타결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노력은 대기업 자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노동부**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임금수준과 기업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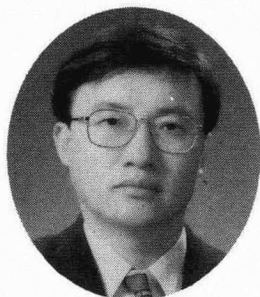
21

세기를 불과 몇년 앞두고 있는 지금, 세계경제질서는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기업활동의 지구촌화가 급진전되면서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선진국의 기업과 정부는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들은 체질강화를 위해 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벤치마킹 등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기술개발지원·정보망확충·생산성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요소가격의 안정이 필수적

최근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1개국 중에서 24위에 불과하다. 이는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약화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



전상우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장

로서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경쟁력은 경쟁상대국인 홍콩·대만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의 상품 및 기타 요소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측정되며, 비가격경쟁력은 상품의 품질·애프터서비스·상품에 대한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로 측정된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하락은 경

쟁국가들에 비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을 비롯한 비가격경쟁력의 총체적인 약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품질·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 등 생산요소가격의 안정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비용은 이미 우리의 경제적 수준을 넘었고, 시장금리 및 금융비용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2~3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역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는 종래 低賃·低地價 등에 의존해 온 우리의 경쟁력 기반을 상실시켜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아세안 같은 후발개도국들에게 추월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비용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임금비용은 특히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부담가중시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은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주요 경쟁국의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90~94년 기간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5.8%로 대만(9.7%), 일본(2.4%), 미국(3.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율의 임금인상은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부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제조업 임금수준은 대만을 상회하고 있고 94년에는 시간당 임금도 대만을 상회하고 있다.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이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위원층이 제시한 적정임금인상률 5.1~8.1%를 정부권고안으로 수용하여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권유하였다.

경쟁력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주요경쟁국에 비해 노동비용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90~94년 기간 동안

노동비용증가율(명목임금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은 5.8%에 달하여 미국(-0.2%), 일본(1.3%), 대만(3.2%) 등에 비해 매우 높다.

단기간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우리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초래

한편,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을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78로 일본(1.19)·대만(1.25)보다 월등히 높아져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타 생산요소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하락은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임금인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임금인상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각각 생계비와 지불능력을 근거로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그 기준이 상이하고 인상률의 격차폭이 매우 커서 적정한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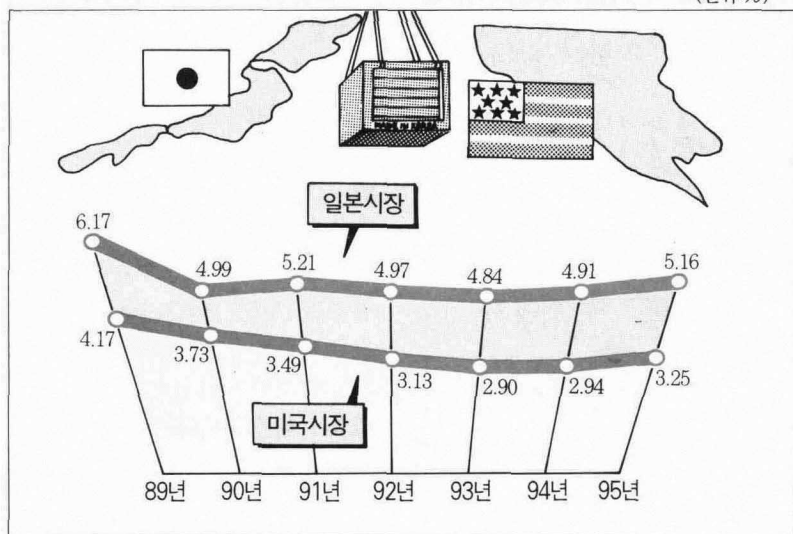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96임금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위원

〈그림〉미·일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 점유율 추이

(단위:%)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측이 제시한 적정임금인상을 5.1~8.1%를 정부권고안으로 수용하여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권유하였다. 둘째, 최근 심화되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임금수준의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의 확충과 협력업체 지원에 활용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다한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 약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대기업 경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된다.

셋째, 현행 우리 임금체계는 年功體系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능력 등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수당의 신설로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임금관리의 본원적 기능인 생산성 제고와 동기유발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수당을 통폐합하고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자제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또한 개인의 능력 및 성과가 반영되도록 직무·직능급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불합리한 임금교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임금관련 항목을 일괄타결하여 복잡한 임금구성 항목별 교섭에 따른 문제점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초기에 원만하게 임금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교섭을 개시하여 교섭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성과가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영에의 근로자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표 1〉 제조업 부가가치 구성비

(단위:%)						
경상이익	인건비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	계
3.18	59.16	9.27	15.49	10.84	1.96	100

자료:한국은행, 「95기업경영분석」

〈표 2〉 명목임금 상승률의 국제 비교

(단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90년	20.2	2.8	4.6	13.3
91년	16.9	3.0	4.5	11.0
92년	15.7	3.3	1.3	10.2
93년	10.9	3.4	-0.3	6.9
94년	15.5	4.2	2.0	6.6
평 균	15.8	3.3	2.2	9.6

자료: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95. 7

통계청, 「계간국제통계」, 95. 9

〈표 3〉 임금수준 국제 비교(제조업)

(단위:달러)						
	한 국		일 본		대 만	
	월평균	시간당	월평균	시간당	월평균	시간당
90년	834.5	3.86	2,430.4	13.74	819.9	4.06
91년	940.9	4.40	2,735.6	15.83	912.7	4.52
92년	1,022.7	4.83	2,941.0	17.52	1,072.0	5.31
93년	1,103.0	5.20	3,340.5	20.42	1,092.4	5.41
94년	1,272.4	6.01	3,399.5	21.03	1,210.4	6.00

자료: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95. 1

〈표 4〉 노동비용증가율의 국제 비교

(단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90년	7.7	0.3	1.3	3.7
91년	3.0	1.0	0.9	-0.6
92년	5.2	-1.4	4.6	5.0
93년	2.9	0.2	1.6	3.5
94년	7.1	-1.2	-2.1	4.6
평 균	5.8	-0.2	1.3	3.2

자료: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95. 1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임금제도의 발전방향

임

금문제는 임금수준의 문제와 임금제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 하는 임금수준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어 가고 양적인 성장보다는 구조조정과 질적인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임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금제도는 크게 보아 임금체계와 임금(지불)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임금체계는 다시 임금구성체계와 임금결정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금구성체계는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구성항목과 내용, 비중을 말할 때 사용되는 임금체계의 개념이다. 흔히 우리나라는 임금구성체계가 복잡하여 임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임금결정체계는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학력·근속연수 등 속인적인 요인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급 임금체계, 근로자의 직



이 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한편, 임금(지불)형태는 임금산정방법·임금지급방법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과제인 임금결정체계의 개선과 성과배분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직능요소를 근간으로 한 종합급 임금체계로의 전환 바람직

우리나라가 연공급 임금체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이 학력·근

속연수 등 연공요소에 따라 격차가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임금은 직위·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금 중에서 연공급적 비중이 얼마이고 직무급·직능급적인 비중이 얼마인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별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직위·직급이나 호봉 등의 중요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이나 호봉 등을 결정하는 요소도 다르고 복잡적이므로 그 구성내용을 정확히 분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직무평가나 근로자의 능력평가에 따라 직위·직급을 부여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학력·성·경력연수 등 연공요소에 따라 직위·직급이 부여되고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는 것은, 전통적으로 경륜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풍토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과거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력과 숙련 기술·기능

인력이 부족하였던 노동시장적인 여건도 임금결정에 연공요소를 중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근속을 유인하여 내부노동시장을 발전시키고 인간중시의 기업풍토를 조성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의 고학력화·중고령화와 산업의 정보화·소프트화가 진전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평균적인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연공급 임금은 인건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중고령인력의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기도 한다. 연공급은 또한 일부 직종 인력의 상용고용을 기피하게 하여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이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크다. 근로자의 노력, 일한 성과를 임금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능력을 임금에 반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능력발전을 유인하기도 어렵다.

연공급이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직무의 성격,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도록 임금체계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직능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급 임금체계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의 대안이라고 본다.

직능급 임금체계의 요지는 임금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직위·직급이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설정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직무의 성격,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도록 임금체계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직능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는 데 있다. 따라서 직능급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능력에 따른 직위·직급체계의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직위중심의 경직적이고 관료적인 직제체제에서 벗어나 직위체계 및 직급체계를 분리하여 직급체계를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직급구분의 다단계화, 직급별 자격요건의 합리적 설정, 공정한 인사평정과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제의 정비 등이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설계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직능자격을 부여하는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능자격제도는 근로자의 능력발전에 상응하여 직능자격이 격상되고 신분과 임금도 올림으로써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을 유인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이끄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직능급 임금체계와 병행하여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한편, 임금결정의 기준으로서 직무요소에 대한 고려는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직종에 따라서는 직무를 규격화·표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직종은 직무요소를 근간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결정의 기준으로서 직능요소와 직무요소가 고려되는 종합급 임금체계에서는 매년의昇級이 근무능력평가·업적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위직급의 경우에는 승급에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폭을 넓혀서 점차적으로 연봉급적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배분제를 통한 생산성 교섭체제 구축해야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19세기 후반 歐美에서는 성과배분제가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화합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노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을 억제한다는 점, 공산주의 유혹의 침투를 억제한다는 점 등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논리로서 원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과배분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성과배분제가 산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성과배분제는 기업의 성과에 따른 결실을 노사가 공유하므로 근로자의 애사심·협동심을 제고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성과배분제의 도입은 또한 근로자 참가제도를 확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위한 매출액·부가가치 등의 목표설정, 성과의 모니터링, 성과달성을 위한 방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설계함으로써 근로자 참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성과배분제는 임금결정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원활한 임금교섭을 이끈다는 점도 성과배분제의 확산에 기여한 요인이다. 1980년대 미국의 양보교섭은 성과배분제의 도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도 92년 총액임금제와 연계하여 임금결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성과배분제가 권장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92년 이후 성과배분제가 크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는 노사협조분위기를 제고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배분제를 단순히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 성과배분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때로는 성과배분제가 노사분규의 소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과배분제도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화하여 확충시킴으로써 생산성 교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단위의 대립적·소모적 임금교섭을 생산적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요건이라 본다. 여기서 생산성 교섭체제는 성과배분 조정기준, 자료의 선정, 목표치의 설정과 생산계획, 실적치 확인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분배몹을 키우는 것과 연계하여 분배몹을 결정하는 임금교섭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도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화하여 확충시킴으로써 생산성 교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단위의 대립적·소모적 임금교섭을 생산적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요건이다.

성과배분제를 통한 이러한 생산성 교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임금교섭체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례적 임금인상은 거시적 준거에 따를 수 있으므로 임금결정에서 국민경제적 고려를 하고 아울러 생산성교섭을 통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기업단위 지불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임금결정에서 거시적 준거기준과 미시적 준거기준을 조화있게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노사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금문제가 단순한 배분문제에서 벗어나 생산의 문제로 연장된다. 즉, 임금교섭이 생산적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생산적인 경영참가를 촉진함으로써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다.

노사협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제도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노동분배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고 있어 임금수준을 둘러싼 노사대립은 점차 완화될 것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협조적 노력이 증대되리라 기대된다. 한편 부가가치에서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노동분배몹을 근로자간에 배분하는 임금체계의 문제와 아울러 사후적 임금지불형태로서의 성과배분제도 등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과거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의 자의적인 임금결정을 우려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서 직무급을 선호하기도 하였고, 객관적 연공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연공급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과배분제도가 작업강도를 높이는 수단이지 않을까의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한편, 사용자측은 임금의 동기부여기능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능률급의 적용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금제도를 노사대립적 이데올로기나 기계적 인간관에 토대를 두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제도를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구축한다는 노사협조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근로자의 경력발전과 생애복지를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직능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급 임금체계가 구축되고 성과배분제를 토대로 하여 생산성 교섭체제가 도입·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협조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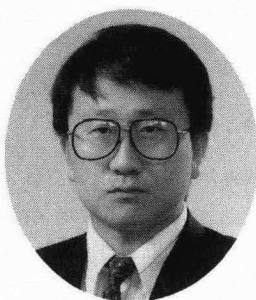
선진국에서의 임금교섭의 신조류

단

체교섭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노조운동은 임금교섭의 대상이 되는 파이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자본가와 나누어 갖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의 힘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조직인데,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이 축소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목표대상이 상실되었다.

시장환경 급변에 따라 노사관계도 변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능력이 위협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8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민영화·규제완화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소위 강성노조의 활동 무대였던 공공부문 및 독점산업에서 노조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높은 임금과 노동조합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한 생산베이스의 이동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노



이종훈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조세력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선진국 초우량기업의 노사관계는 가치창출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노사협력 선언 등의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원가 더하기 경쟁에서 소비자입찰 경쟁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른바 유연생산방식을 구축하고 노사관계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남보다 빨리 대응하여 소비자로부터 입찰을 따내기 위하여 선진국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적기'에 납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브랜드와 빠른 상품화가 요구되며, 이것은 유연한 생산방식을 전제

로 한다. 즉, 다양성과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개념이 바로 유연성이다. 전후 종업원 多能工化를 추구한 일본의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소품종대량생산의 포디즘(Fordism)에 익숙한 미국이나 도제제도를 발판으로 한 크래프트생산방식에 익숙한 독일까지 최근 유연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유연생산방식은 기업특수적(firm-specific)이면서, 다능공(job-general)의 인적자원 개발로 표현되는 노동유연성 제고를 의미하게 된다. 때문에 선진국 기업은 노동자와 장기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형성을 위한 투자를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재 기업에서의 고용안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의 다능공의 노동자 성격은 외부기업(외부노동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인적자원 관리 전략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 기업이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전략을 추진할 때, 노동자들은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고

용불안이 가중되므로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다능공화를 고용보장을 대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측면이 있다.

한편 팀제로 대표되는 유연조직과 종업원 재훈련 강화도 유연생산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직의 유연한 재구조화를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고 고용안정이 전제되었으므로 노동자도 불안감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된다. 다능공화와 팀리더의 전문지식 형성을 위해 종업원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받게 유인하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된다.

임금유연성 제고 전략의 추진

선진국 기업은 기업특수적 숙련의 다능공의 형성을 위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경직성의 비용부담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고 덜기 위한 보완장치를 갖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유연성의 제고이다. 고용(수량)안정을 위해서는 임금(가격)이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여야 기업경영의 운신의 폭이 보장된다는 논리이다. 독일을 비롯한 산별노조조직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분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양보교섭과 이익분배제가 도입된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단체교섭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실리적 조합주의'로 대표되는 미국노사관계는 '파이 키우기' 즉, 생산성 제고보다는 '파이 배분'에만 노

선진국 기업들은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변동성과급 비중 확대,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유인하는
지식·숙련급의 도입, 팀별
성과급과 훈련 인센티브 제공 등
새로운 임금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운동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임금안정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이다.

양보교섭에 의한 임금협약의 변화는 임금-물가연동조항(COLA: Cost-Of-Living Adjustment)의 적용중지 및 삭체, 계약 첫 해의 임금삭감, 이익분배제 등이 있다. 특히 이익분배제의 경우 90년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는 40.7%,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38.2%가 이익분배제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서 매우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은 실제로 80년 이후 실질임금이 거의 정체 내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노동비용을 낮추면서 4천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룬 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은 임금이 약 60% 상승하고 고용창출은 단지 200만~300만명에 그쳤다.

한편 임금유연성을 제고하는 임금협약이 일반화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가격경쟁력도 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회복되었다. 〈표 2〉를 보면 미국의 단위노동비용은 85~92년간 연평균 1.3% 증가한 반면에 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은 이를 상회하는 9~13%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종업원의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知識・熟練給 지급

유연생산방식을 위해 다능공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만 한다. 다능공 양성은 전환배치와 현장훈련에 의해 가능하고, 이는 다시 고용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고용관계는 다능공 양성을 위한 기

〈표 1〉 주요국의 제조업 실질임금 추이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80	100.0	100.0	100.0	100.0
1985	130.5	102.8	105.1	125.0
1990	219.5	96.5	119.4	204.2
1991	234.7	95.4	119.5	218.8
1992	255.6	94.5	119.0	231.0

註: 自國通貨 기준
자료: Monthly Labor Review

본적인 인센티브이다. 지식·숙련급은 다능공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로서 도입된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업원의 지식·숙련 수준을 다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임금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식·숙련 형성을 통한 단계승진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 지식단계의 도달시 승진으로 동시에 보상함은 물론이다. 지식·숙련급은 종업원의 숙련형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숙련형성의 촉진을 유도한다는 사후적인 인센티브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지식·숙련급은 필요지식과 숙련의 단계를 예시해 줌으로써 종업원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식케 하여 숙련형성을 위한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사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시그널링 효과를 통해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유인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팀별 성과급 도입과 종업원 재훈련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팀제가 일반화되면서 보상임금의 단위도 팀으로 변화된다. 과거에도

개인별 산출물 차별에 의한 보상차별(예: piece-rate)이 있었다. 그러나 팀별로 임금보상을 차별화(예: 팀별 보너스)함으로써, 팀성과 제고를 유도하는 유인효과를 갖게 되고 성과측정의 기준을 양보하는 가치 즉, 질적 성과의 측정으로 바꾸게 된다. 팀은 단순히 적정생산단위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장자율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초조직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율경영은 종업원의 작업능력이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팀장으로서의 중간관리자도 감독이 아닌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단순한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초우량기업은 이를 위한 임금부분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GM-Saturn은 의무적인 교육·훈련시간을 전체 작업시간의 5%로 규정해 놓고 팀구성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의무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금의 일부(7%)를 팀원 전체가 되돌려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교육·훈련에 충실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새로운 임금결정원리로서의 '持分賃金' 개념 도입 필요

앞서 소개한 새로운 임금결정방식 즉,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변동성과급 비중 확대,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유인하는 지식·숙련급의 도입, 팀별 성과급과 훈련 인센티브 등은 임금결정 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즉, 과거 임금생계비설·임금기금설 등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임금결정방식이기 때문

이다.

기업특수적 지식·숙련을 가진 노동자와의 장기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에 이러한 기업특수적 지식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기여도에 따라 창출된 가치를 배분하는 원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지분임금(share wag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의 배분은 투자된 자산의 투자 가치에 따른 지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수자산으로서의 노동(노동자도 주식투자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숙련·지식을 투자한 자산소유자라는 시각임)에 대한 임금 배분도 기여도에 상응한 지분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분임금'이라는 개념은 경제학 문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本稿에서 처음 제기하는 것이다. 굳이 기존이론과 비교해 본다면 렌트공유(rent-sharing)에 의한 임금결정론과 유사하나, 렌트공유론은 렌트배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는 반면에 지분임금론은 렌트창출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지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임금은 성과변동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므로 임금유연성이 보장되고, 기여도 차이에 따른 임금 차별이 이루어지므로 지식·숙련급과 팀보너스 등등 능력주의의 임금 제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결정방식은 앞서 소개한 선진국의 새로운 임금결정방식에서 이미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표 2〉 주요국 제조업의 연평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1985~92년)
(단위: 미달러 기준, %)

국명	증가율
미국	1.3
일본	10.8
한국	9.9
대만	10.6
프랑스	9.3
독일	13.1
이탈리아	11.1
스웨덴	11.0

자료: Monthly Labor Review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醫術은 仁術’ 이
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의료행위의 객체
인 환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들을 상대
로 한警句임을 새삼스럽게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네 질병을 치
료해주는 의술인들을 최고의 존칭으
로 불렀으며 거의 절대적인 복종으
로 숭배해왔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은 과거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
거나 불치병으로 알고 생을 포기해
야만 했던 수많은 인명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병쯤은 언제라
도 병원에만 가면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의사·환자
간 신뢰도는 오히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나
여건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일어난
결과이겠지만 의료사고 등 각종 의

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연말 검
찰이 발표한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
내역을 보고 이제 ‘인술’을 대신할
어떤 낱말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넘
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분
노마저 느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
을 것이다.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 적발된 의
료사고들을 유형별로 보면 먼저 6건
의 수혈사고는 간호사가 환자의 혈
액형을 착각하고 다른 혈액형의 피
를 환자에게 수혈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잘못된 수혈은 혈액형 부적합
에 의한 부작용으로 급성신부전과
출혈을 유발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투약사고의 경우 이노제를 투여해

야 할 간경화 환자에
게 마약류인 엠에스콘틴
을 투여하고, 간호일지를 제
대로 기록하지 않아 후임간호사가
이중으로 약을 투여한 사고 등이 적
발됐다. 이 밖에도 정맥주사의 주사
바늘이 끊겨 바늘이 혈관을 타고 이
동한 사례, 간호보조원이 정신과병
동의 열쇠를 분실해 그것을 주운 환
자가 집으로 도망간 사례 등 어처구
니없는 사고들이 있었다.

검찰은 위 의료사고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호사들의 수급불균형으
로 인한 업무과중, 병원측의 은폐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무성의하거나 부주의한 마
취·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또한 적
지 않은 실정이고 보면 작금의 우리
나라 의료계가 총체적으로 ‘환자에
대한 애정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보
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입원·수술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환자에 대한 애정결핍증’은 그동안 병원에서 사용하여 왔던 입원약정서, 수술(마취·검사)동의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및 5대 광역시의 주요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원 및 수술약관을 조사·분석하여 95년 4월 발표한 「병원이용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모든 병원들이 환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병원측에만 유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수술후 일반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서 서명 날인토록 한 수술동의서 조항, 병원소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술방법 및 진료상의 모든 문제를 병원에 일임하여 이후 여하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토록 한 수술동의서 조항, 정해진 수술시간이나 순서를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원시 병원에서 판매하는 세면도구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입원약정서 조항, 병원측 지시에 무조건 순응할 것을 강요하거나 의료비 계산착오, 과다한 의료비용 청구 등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불합리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금지하여 항변권을 제한하고,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만 訴제기가 가능토록 한 입원약정서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약관조항들은 이미 지난

90년 약관심사위원회에서 무효심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사용돼 왔던 것이다. 86년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심사위원회에서 무효로 의결한 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해당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경제기획원장관이 시정권고하는 권한 밖에 별다른 규제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92년 동법이 개정되면서 약관심사업무가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법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정위가 나서게 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10개 병원실무진들로 구성된 ‘병원이용약관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약정서」와 「수술(마취·검사)동의서」를 마련하였고 96년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으로 승인받게 된 것이다.

◀병원 이용약관 주요 개선내용▶

금번 표준약관의 제정에 따라 개선된 사항들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후유증 등 진료상 발생하는 일체사고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 즉, 수술 또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있어 병원측은 그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방적인

면책조항에 대하여, 병원측의 진료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며, 진료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됨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원활한 진료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수술 등에 따른 내용의 설명 및 기재, 사본의 교부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명칭·내용·필요성·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은 환자측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치의 또는 설명의사의 설명시 그 설명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입회간호사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하며, 환자가 그 동의서 사본을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측은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既往歴·특이체질·알레르기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그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는 데 동의토록 하였다.

셋째, 의료분쟁발생시 재판청구권 조정신청 조항 즉, 의료분쟁발생시 의료심사위원회에 우선 조정신청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아 조정제도의 이용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진료비 미납시 병원조치에 대한 항변권제한 조항 즉, 입원료 등 체납시 병원측은 그 채권확보를 위해 여하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제3자의 임의채권양도 등을 할 수 있고 환자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하여, 입원료 등의 정당한 이유없이 체납시 입원보증금으로의 대체

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의 동의없는 제3자에의 채권양도는 삭제토록 하였다.

다섯째, 비품·기물 망실시의 이의없는 변제조항 즉, 병원의 비품 또는 기물의 망실·훼손시 환자측이 무조건 변상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 환자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한 때에만 변상토록 하여 내구연한의 종료로 인한 자연적 훼손 등 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

여섯째, 현금 및 소지품 분실시의 보상 조항 즉, 입원기간중 분실사고에 대하여 병원측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는 조항에 대하여, 병원측의 허술한 시설관리 또는 병원직원 잘못으로 인해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 등의 보관의뢰제도를 두어 보관의뢰하지 않은 분실·훼손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없도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수술시 동의절차 없이 병원의의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하거나, 소송발생시 재판적을 병원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은 삭제하였다.

◀표준약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최근 법원에서도 종전 내용의 수술전 각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질병의 病狀,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환자가 승낙권(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였느냐를 따지고 있다. 또한 병원측이 현대의학으로도 사고발생이 불가피했다거나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병원측과 수술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었다.

이러한 판례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따라서 계약내용으로 주장되어질 수 없다는 법원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醫聖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선언'에 보면 "어떤 환자는 비록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지라도 단순히 의사의 친절에 대한 만족감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 등 서류에서 "어떤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각서를 강요당할 때 의사의 친절을 기대할 수 없음을 당연하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의료행위 결과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어도 그만이라는 취급을 당하게 된 신세를 한탄할 것이다.

의사·환자간 신뢰관계야말로 의료사고 발생이나 의료난동 행위를 예방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표준약관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 신뢰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

경 제 상 식

• 100PPM(Parts Per Million) 운동

100PPM 품질혁신운동이란 제품 100만개 중 불량품을 100개 이하로 줄이자는 품질개선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이는 종전까지 통계적 품질 관리기법에서 불량률 관리단위로 사용하던 백분율(%) 즉, 제품 1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몇개인가를 따지는 개념에 비해 100배 이상으로 불량률 관리가 강화된 혁신적인 불량률 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다. 100PPM 품질관리는 무결점 사상에서 시작된 완벽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100% 완전제품화운동(perfect product movement)로 해석되기도 한다.

원래 PPM은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물리·화학 분야

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70년대 일본 마쓰시다電氣가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이후 품질관리의 불량률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PPM 관리기법은 일본의 산업현장에 폭넓게 보급되어 있고 유럽지역에서도 일반적인 불량률 단위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초 일부 기업들이 PPM 관리기법을 도입,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100PPM 품질혁신 운동을 전산업계에 확산시켜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성기를 높이고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배분, 노사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화'와 일본의 '세계화'



박우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는 지금 세계화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계화의 개념마저 아직 분명치 않아, 혹 이렇게 가다간 현정권이 바뀌면 또 흐지부지되지나 않을지 걱정들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세계경제는 지구촌화(globalization), 개방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연계망 구축(networking),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및 특화산업개발 등 새로운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들 말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의 경우, 혹 세계화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또 너무 서둘러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이다. 우리는 왜 일본이 우리보다 세계화의 자격을 더 갖추고 있는데도 겨우 국제화 정도만 내세우고 있는지, 왜 미국은 세계화를 추진하다 깜짝 놀라 안으로 첨단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 힘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화가 국내에 매년 1천억달러 이상씩 계속 들어와도 수전노와 같이 정부와 기업의 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들 외화를 해외민간투자의 형식으로 나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空洞化라 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 온갖 나라와 그토록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이

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장기화하고 있으며 흑자인데도 인플레이는 커녕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WTO체제하에서도 경쟁력 있는 것만 열면서, 서비스와 지적소유권에 특히 조심하면서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의 경제운용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겉핥기만 할 뿐 그 속을 정확히 살피는 학자 역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흑자를 다루는 지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치경제학적 철학과 야망, 이 모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들이다.

우리는 이런 일본식 경제운용과 전연 다른 사고·시각·경제이론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흑자보다 균형을 택하고 또 해외 직접투자를 空洞化가 아닌 생산으로 간주한다. 흑자가 조금 쌓이면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마구 써버리는 습성이 있고, 국내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적 불균형이 생긴다고 걱정하거나 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기 때문에 흑자분만큼 소진해버리는 게 더 편하다는 사고가 은연중 지배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으로 균형을 내세우면서 정치경제학을 잘 모르는 소치라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채가 만성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걱정은 커녕 확대균형이라는 예쁜 이름에 현혹되어 균형 아닌 적자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본

의 수출확대 정책을 오히려 新重商主義라 평가절하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수지가 적자이면서도, 외채가 이제 700억달러를 넘어섰는데도,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우리 자본과 기술을 밖에서 꾸어 오면서까지 지구의 방방곡곡에 투자하고 있다. 한계산업과 사양산업은 물론 요즘은 첨단산업까지 이전하고 있다. 중국·미국·아세안과 유럽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정유·호텔 등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일본식으로라도 잘하면 되고 한국식으로라도 잘만 하면 된다. 둘 다 나름대로의 경제논리를 지니고 있다. 한국식을 걸만 보면 미국식 사고, 미국식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미국이 갖추고 있는 경제여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경우 美·日의 경제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소수의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업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계류를 포함한 자본시설재와 부품 및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에 절대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경제적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균형이란 경제개념을 뛰어넘어선 세계 정치·경제대국으로의 야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도 맞대응하면서 수천억달러 이상의 외화누적을 지속하면서도 空洞化를 염려하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우리로서는 엄두도 못낼, 또 우리가 이는 경제논리를 뛰어넘어선 국가경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범지구촌화의 기업경영을 어느 나라보다 앞서우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조직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또 외교·국방력을 배경으로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특히 시설재와 부품의 국내생산이 줄어들자 일본 부품과 시설을 사들여왔는데, 그만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쌍둥

이 적자에 봉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첨단기술개발로 적자를 메우면서 겨우 지탱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자본시설재와 부품을 사다 이들을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는 처지인데 세계화를 너무 앞질러 추진하다 보면 얼마 못 가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되고 일본에 영영 두손 드는 결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때 시설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화란 경제적 의미에선 국산화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치산업의 정부지원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이 10년 안되어 주력성장산업이 뒤바뀌는 시대에선, 잘못하다간 껌데기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좋다. 또 WTO체제하에선 부득이한 일이기도 하다. 또 밖에서 경쟁요인을 도입, 안을 자극할 필요도 있고 눈을 나라 밖으로 넓히고 늘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있는 대기업만 세계화되고 중소기업과 농업, 유통과 금융 등은 주저앉아 버린 다거나, 불필요한 마약·범죄·해외소비만 세계화되는 꼴을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세계화의 성공은 의식과 제도,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이 뒷받침되면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경쟁력과 기술력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시설재와 부품의 첨단기술력이 빠르게 진전될 때, 또 앞으로 우리 적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몇 개라도 더 가질 수 있을 때, 수지균형과 해외직접투자가 세계화와 이어지면서, 미국 같은 쌍둥이 적자를 회피하면서, 또 일본의 경제대국화를 追及하면서, 21세기의 한국경제를 꺾충 뛰어오르게 할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화를 정확히 알고 그 조건을 구비하면서, 또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한 걸음씩 착실히 진행할 때 비로소 세계화의 열매가 달게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역수지흑자와 공동화, 이 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한다. **한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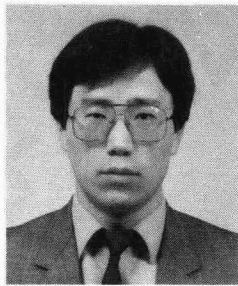
올해 임금인상률은 12.2%가 적정

95년도의 고성장과 수치상의 물가안정에 뒤이은 96년의 경제세는 경기하강과 물가불안으로 특징지어진다. 95년도 경제성장률은 9.3% 고율성장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4.5% 상승하였다.

정부와 사용자는 중앙단위 임금교섭을 희망하면서 노총과 경총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임금인상률에 관한 勞·使·政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노총은 지난해 12월 2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임금정책방향을 논의하였으며 96년도에도 중앙단위 임금교섭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하고 1월 31일 열린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임금인상요구율 12.2%를 확정하였다.

중앙단위의 임금교섭은 단위노조가 결과 수용하는 데 한계

정부와 경총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 임금교섭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중앙단위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생계비 확보를 위해서 노총은 96년에 12.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 산출근거는 우선 9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고려하여 96년에 확보해야 할 생계비 목표는 125만5,497원으로 하고 95년도 전산업 평균임금 111만9,029원과의 차액을 요구한 것이다.

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이 산별체제가 아닌 기업별체제 하에서 중앙단위의 임금교섭은 단위노조가 이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부당한 노사자를 침해요인으로 오해될 소지가 더 크다 하겠다. 또한 중앙임금협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책참가와 이에 기초한 정책·제도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중앙단위 임금교섭에 관한 조직적 공감대가 미흡하며 특히 금년에는 노총 위원장 선거가 겹쳐 책임있는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중앙단위 임금교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이 노동자의 생활상태 개선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제는 임금인상투쟁을 정책·제도 개선 투쟁 즉, 경제민주화와 결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노동자의 지위개선은 물론 불균등한 사회구조 개혁을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교섭단위와 영역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교섭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임금교섭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기주의로 인한 정보교환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심각하게 재고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수평적 형태의 제고를 중요시하는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하겠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개선이 임금교섭의 최우선 목표

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우선 노동자의 실질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소득 증대에 의한 직접적인 생활개선은 물론 세제개혁과 복지확충을 통한 간접소득의 증대와 계층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한 상대적 소득의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임금교섭은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결속을 굳게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임금교섭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 교섭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을 확대하여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활동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책·제도 개선투쟁은 경제민주화의 추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기업별 노조체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종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산별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교섭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실질적인 생활의 개선이 최우선 목표이다. 아직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노동자가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은 금년도 임금투쟁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생계비 확보는 노동조합 임금인상의 첫째 목표이다.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것이 바로 생계비이다. 생계비는 한 가족의 의식주 해결은 물론 교육과 교양·오락 등 문화생활까지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사업장의 평균 부양가족수에 따른 임금평균과 생계비와의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임금인상의 첫 번째 목표가 된다. 노총에서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산출,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총에서 사용해 오던 생계비 모형은 지난 90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그동안의 소비구조와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95년에 생계비모형을 개정하였으며 가구원수별 생계비는 <표>와 같다.

이와 같은 생계비 확보를 위해서 노총은 96년에 12.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 산출근거는 우선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 3.72인과 근로자가구의 가구소득 가운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69.78% 그리고 9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고려하여 96년에 확보해야 할 생계비 목표는 125만 5,497원으로 하고 95년도 쉰 산업 평균임금 111만9,029원과의 차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과 고정적 상여금 월할분을 포함한 것이므로 노총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액 10만 881원, 인상률은 12.2%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노총의 요구율은 생계비 상승과 물가상승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요구라 할 것이다.

90년 이래 임금인상률 하락세

지난 89년에 임금상승률이 21.1%를 기록한 이래 90년 18.8%, 91년 17.5%, 92년 15.2%, 93년 12.2%, 94년 12.7%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12% 정도의 상승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인상률의 하락추세는 결국 생계

<표>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생계비(1995년 10월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도시근로자 생계비	691,654	1,087,753	1,477,616	1,857,617	2,698,988

자료: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비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특히, 노동 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초래하여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을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자의 지위개선에 역행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92년부터 인건비증가율이 부가가치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과 인건비증가율을 비교해보면 92년은 각각 12.6%와 12.0%, 93년에는 14.0%와 10.5%, 94년에는 18.1%와 15.7%, 95년도 상반기에는 21.9%와 14.7%로 그 격차가 점차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부가가치의 배분이 기업측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 상승세에 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8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91년의 54.3%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92년 54.1%, 93년 52.6%, 94년 51.2%, 95년 상반기에는 48.0%로 떨어져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였다. 이는 결국 생산성 증가 즉, 기업의 논리인 생산의 노동의 기여도에 비해서도 임금인상이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보아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경제에 따르면 영업잉여 증가율을 웃돌던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93년에 역전

**임금인상은 생계비 충족의 원칙,
노동대가의 원칙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차별성이 없는
임금결정이어야 한다는 사회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임금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되어 각각 12.3%와 9.9%, 94년에는 13.6%와 13.2%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92년의 47.4%를 정점으로 93년에는 46.9%, 94년에는 46.4%로 하락하였으며 임금상승과 취업자 가운데 피용자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상대적 소득은 감소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95년도의 경제성장률이 94년보다 1%p 가량 상승한 9.3% 정도로 추정되고 임금상승률은 9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95년에는 피용자보수의 비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감안할 때
12.2%의 임금인상 요구는 최저선**

임금인상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생계비 충족의 원칙이며 둘째는, 노동대가의 원칙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며 셋째는, 사회성의 원칙으로 기업

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차별성이 없는 임금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볼 때 지금 우리의 임금은 생계비에도 미달하고 노동의 대가로서도 충분하지 않으며 각종 임금격차는 사회성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측과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총이 요구한 12.2%의 임금인상은 96년도에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금년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노총의 임금인상요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유지에 그칠 정도로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임금인상이 노동자의 근로의욕 제고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천하는 친절행정
쌍어가는 국민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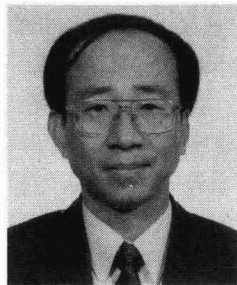
올해 임금인상률은 4.8%가 적정

올해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표출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는
본격적 하강국면으로 들어설 전망**

올해 세계경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체제전환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교역신장률은 개도국의 고성장 및 교역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입물량 증가세 둔화로 6.6% 신장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한편 국내경제는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9%대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던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7.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의 경우 94년부터 계속된 신·증설투자가 일단락되고 엔화의 강세전환, 경기의 하강국면진입 예상 등으로 증가율이 7.2% 내외로 낮아지면서 성장이 내수주도형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2부장

연중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고율성장에 기인한 초과수요압력, 총선거 실시에 따른 기대심리 등 물가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4.8%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사정은 전반적인 경기하강추세를 반영, 지난해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생산성증가율을 웃돌아**

지난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11.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과배분과 복지후생확대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를 감안한 연말기준 실제 임금상승률은 이보다 높아져 결국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은 우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익성과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경영계는 올해 임금 조정의
기본원칙을 자본기여도를 감안한
국민경제생산성 범위내 임금조정,
기업의 규모·업종간 임금격차의
축소, 총액기준 인건비관리 도모,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에
두고 적정 임금인상률을
4.8%로 제시하였다.**

추세에 있다. 이 같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근로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85~94년중 4배 이상 증가하여 동 기간중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배율 1.7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동 기간중 꾸준히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는 어느 정도 가구당 취업인원수 증가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가구주의 근로소득 즉, 임금상승이 높게 이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는 가계수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 근로자가구의 흑자율이 85년 23.9%에서 94년에는

28.2%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은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

지난 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86~89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6%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았으며, 90~94년중에도 16%로서 중국(14%), 대만(10%), 싱가포르(10%), 일본(2%)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한편 임금수준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86년에는 제조업기준 341달러로서 대만과 홍콩·싱가포르에 뒤진 것은 물론 일본의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1,273

달러로 대만과 홍콩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1인당GNP 대비 임금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간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그 배율이 86년 1.6배에서 94년에는 1.8배로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94년 기준 홍콩의 0.59, 싱가포르 0.89는 물론 일본(1.19), 대만(1.2), 미국(1.0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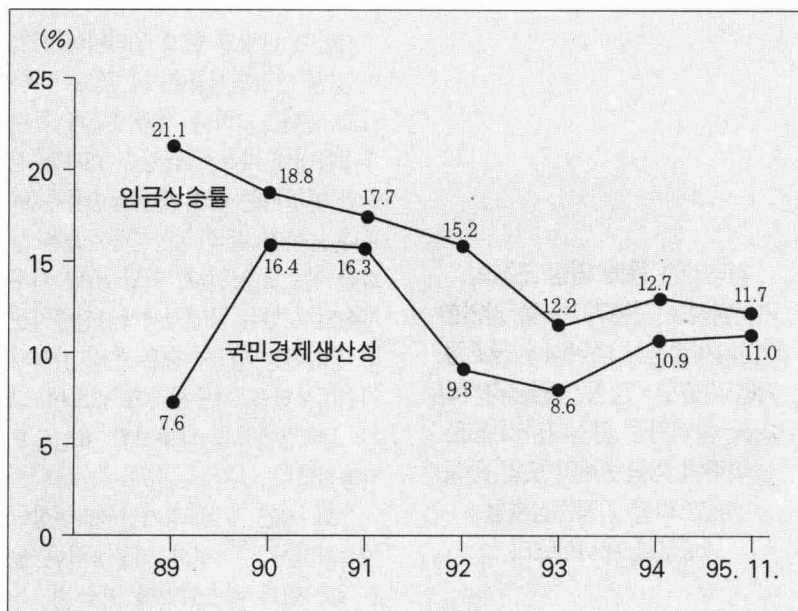
임금이 아무리 높게 상승하여도 생산성이 이를 초과할 경우 기업으로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으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임금코스트가 높아져 경쟁력 약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86~89년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임금코스트는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중 대만의 4%, 홍콩 1%, 싱가포르 1%, 일본의 -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며, 90~94년중에도 평균 4%로 나타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불능력 경쟁국에 비해 훨씬 낮아

우리 경제는 현재 대기업 및 중화학공업은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및 경공업은 생산감소와 휴폐업·도산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3%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부문은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어 부문별

〈그림〉 임금 및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노동부, 한국은행

로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중화학 부문의 경우 94년 13.0%에서 95년 3/4분기에는 17.4%로 지속적인 고율성장을 시현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94년 3.6%에서 95년 3/4분기에는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냈다.

이를 반영, 지난해의 경우 1만4천여개에 이르는 기업이 부도를 냈고 올해에는 더욱 악화되어 부도업체수가 1만7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노동분배율은 62.6%로 대기업의 46.5%보다 훨씬 높아 고율 임금상승에 의한 경영압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자기자본 비율은 최근 4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못한 24.8%로 대만의 51.8%, 일본의 32.0%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수익성면에서도 영업활동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차입금의존으로 금융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쟁국 중 최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지불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금리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에 따라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타 경쟁국에 비하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영계가 보는

96년 적정임금인상률은 4.8%

올해의 임금조정은 앞에서 살펴본 대내외 경제여건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영계가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 4.8%의 산출근거는 올해 예상되는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9%에서 자본기여도 4.2%를 차감한 것이다.

이러한 임금조정은 물가와 임금상승과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과를 임금인상에 연동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 및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임금수준 및 국제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영계는 올해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을 자본기여도를 감안한 국민경제 생산성범위내 임금조정, 기업의 규모·업종간 임금격차의 축소, 총액기준 인건비관리 도모,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고용안정과 효율적 인력관리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원칙을 감안하여 경영계에서 제시한 올해의 적정임금인상률은 4.8%이다.

이의 산출근거는 올해 예상되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9%에서 자본기여도 4.2%를 차감한 것이다. 국민경제생산성기준 임금조정은 물가와 임금상승과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과를 임금인상에 연동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 및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본기여도의 고려는 자동화와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것이다. 첨단기술시대에서 부가가치 증가의 상당부분은 자본기여의 결과

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산성증가에서 자본기여분을 차감함으로써 기업의 적정이익 유지와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생산성증가에서 자본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기업경영상 종업원 1인당 자본코스트 증가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자본코스트 증가율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勞使동반자적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키워야

올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 국경 없는 경쟁체제하에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반영, 지금 세계각국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산업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노사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생산성향상에 적극 동참하는 동반자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노사는 하루빨리 춘계임금교섭을 마무리한 후 지난해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당면과제인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

정 종택

환경부장관

대담 : 박정희/행정쇄신위원회 환경위원

• 때 : 96년 3월 13일 • 곳 : 환경부장관실





대담자 **박정희** 행정쇄신위원회 환경위원

1939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생.

1962년 이화여대 가정대학을 졸업한 후 민간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해 오면서 91년 1월부터 95년 1월까지 4년간 서울YWCA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행정쇄신위원회 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지난해 부임하시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평가를 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나 쾌적한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큰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바로 「환경비전 21」입니다.

「환경비전 21」의 목표는 하나뿐인 지구와 국토환경을 영원히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또한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와 자원재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근 30여년간 건설과 개발로 인해 훼손된 국토의 생태계를 치유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룩하는 환경모범국가로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등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남아 있고 봉투가 잘 찢어지는 등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시행 1년 만에 국민 및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쓰레기발생량이 27% 줄어들었고, 재활용품이 35%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

부들도 물건을 살 때 쓰레기가 덜 발생되는 제품을 사는 등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문제점과 함께 소규모 유해쓰레기나 페스티로폴 분리수거 및 재활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금년을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의 해'로 정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음식물 퇴비화 등의 기술을 개발하며 재활용처리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계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그때마다 우리 서울의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느껴집니다.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여 보면 아황산가스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오염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지하철 등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매연의 양이 늘어난 때문이며, 또한 이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공기중에서 2차 입자상물질로 변하여 이로 인한 공기의 탁도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정연료의 확대 공급의 일환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직도 병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오는 97년까지

는 전량 LNG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공해 저감을 위하여 생산시부터 저공해차로 생산토록 하고, 근본적인 자동차 공해 저감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압축천연가스(CNG)·전기자동차 등 초저·무공해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문제 중 가장 큰 관심사항은 뭘니뭐니해도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물소비 증가로 물부족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나마 확보된 물도 각종 오·폐수 등에 의한 오염으로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현재 연간 공급가능한 물의 양은 310억t으로 수요량 290억t에 비해 약 7%의 여유가 있으나, 계속되는 물소비와 산업용수 수요증가로 인해 2006년에는 예비율이 1.7%로 떨어지는 등 물부족현상이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의 증가로 상수원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수질오염사고의 빈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등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총 15조9천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상수원수 수



환경부에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업과 민간단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환경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이 나쁜 하류지역 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수원수를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많이 차리고 또한 많이 남기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을 남기면 아까운 식량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서울 YWCA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방안을 2년에 걸쳐 실험해 보았지만 큰 성과를 못 보았습니다.

▲ 음식물쓰레기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거·운반도 어려우며, 소각시에도 경유 등 보조연

료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어 매립시 관리도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같이 골치아픈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줄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야채류의 유통과정이나 음식물의 조리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범국민적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산지에서 다듬어 이송하거나, 식당에서는 '좋은 식단체'를 확대하여 먹다 남은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퇴비화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공차원에서 추진하



올해를 '녹색환경 실천의 해'로 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 위하여 현재 난지도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하루 15t 처리규모의 공공 퇴비화시설을 시범설치중에 있는데, 동 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기술축적과 함께 효과성 검증을 거쳐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보전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나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보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해양 오염 등이 주요한 지구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산성비·황사와 같은 대

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황해 오염문제가 주요 환경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국제환경협상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의 국내 이행계획을 성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 규제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기업 환경친화적 생산활동 유도, 환경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등 환경 대책을 중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93년과 94년에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주변 국가와 환경협정을 체결하여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환경 전문가 파견, 고위 공무원의 정기인사교류, 환경정보자료의 교환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환경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환경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북한을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환경행정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환경부에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업과 민간단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환경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녹색환경 실천의 해'로 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경제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추진으로 우리의 금융시장에도 국제화·개방화의 파고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도 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다.

국제화·개방화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관한 업무영역 조정은, 금융개혁 계획상의 기준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업 등 각 금융권간의 고유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업주의를 유지토록 하되 자회사 등을 통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적은 업무는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권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자유화된

금융구조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개편

하나의 변화는 전자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확산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의 금융시장도 국경을 초월해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정보의 확보가 용이한 개인과 기업들은 금융수요를 다양화시켜 가고 있다.

개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업규모의 확대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융수요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금융산업 개편의 내용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진입제한의 완화,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 금융기관 소유구조의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속한 금융산업개편이 금융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개개 사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



이종갑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장

금리체계 안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자유롭게 하고 국공채의 창구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신탁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통화채 인수 비율을 인하하고 제조업 대출 지도비율제도를 폐지하는 등 업무영역의 확대와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제도를 개선해 왔다.

앞으로도 은행권의 업무영역은 계속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신탁제도, 장기설비금융제도, 농·수·축협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은행의 신탁제도는 장기금융상품 및 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신탁 본래적 기능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설비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축협 신용사업의 경우는 현재 시행중인 독립사업부제의 성과가 평가되는 대로 '독립사업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용사업 부문에 별도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신용사업의 추진체계를 조정해 갈 예정이다.

증권산업의 경우는 국제증권업무 인가를 받은 27개 증권사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에 원화 및 외화에금계정을 개설

하고 증권투자 자금을 입·출금 또는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해 오다가 '95증권산업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정기국회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여 증권산업 개편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 간에는 자회사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만을 전담하는 투신사 신설을 허용하고 그 밖에 투신업의 공시제도 강화, 신탁재산의 부당운용 방지, 계열관계에 있는 증권·투신사 간의 거래제한, 인사·정보교류 제한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며 증권회사의 투신사 설립 및 투신사의 증권업 진출도 허가할 예정이며 투신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상호활용하고 투신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96년중에 투신협회를 설립토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증권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신업을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증권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금년초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국공채 창구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실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업무준비를 갖추는 대로 곧 창구판매를 허가할 예정이다.

97년까지는 보험사의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하고 98년까지는 보험브로커제도도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제3분야(상해·질병·介護보험 등) 겸영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

투금사·종금사의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95년 정기국회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금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 통합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투금사 중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회사에 대하여는 투·종금 통합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며, 금년 7월부터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금사 확대가 재무구조의 취약이나 경영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종금사들도 자본금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금융산업 개편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은, 금융개혁 계획상의 기준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업 등 각 금융권간의 고유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업주의를 유지토록 하되 자회사 등을 통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적은 업무는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있다.

기타 비금융기관의 경우, 95년초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예·적금 취급을 허용하였으며 95년 11월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마련하여 96년 1월 31개의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할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감독 및 검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건전성을 수시로 체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실한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 금융상품인 선물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선물거래소를 98년초까지는 개설할 수 있도록 선물협회를 설립하고 선물상품을 개발하는 등 실무준비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리스회사의 업무영역 조정문제도 검토해 갈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진입제한 완화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는 「금융개혁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5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입제한 완화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별 특성, 시장경쟁 상황, 대외개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해 가되, 장기적으로는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경쟁심화와 부실화에 대한 충분한 보완장치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규모가 충분히 확대될 경우 전면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경쟁촉진, 대외개방, 지역금융 활성화 및 틈새시장의 금융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은행권에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증권의 경우 한국산업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신설을 허용한 바 있으며, 9개 지방투금사를 종금사로 전환하고 31개의 할부금융회사를 새로이 설치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증권사와 투신사간 자회사방식을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등 진입제한은 계속 완화해 갈 계획이다.

경쟁촉진이나 대외개방과 관련한 신설수요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일류 금융기관과 경쟁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있는 금융기관의 출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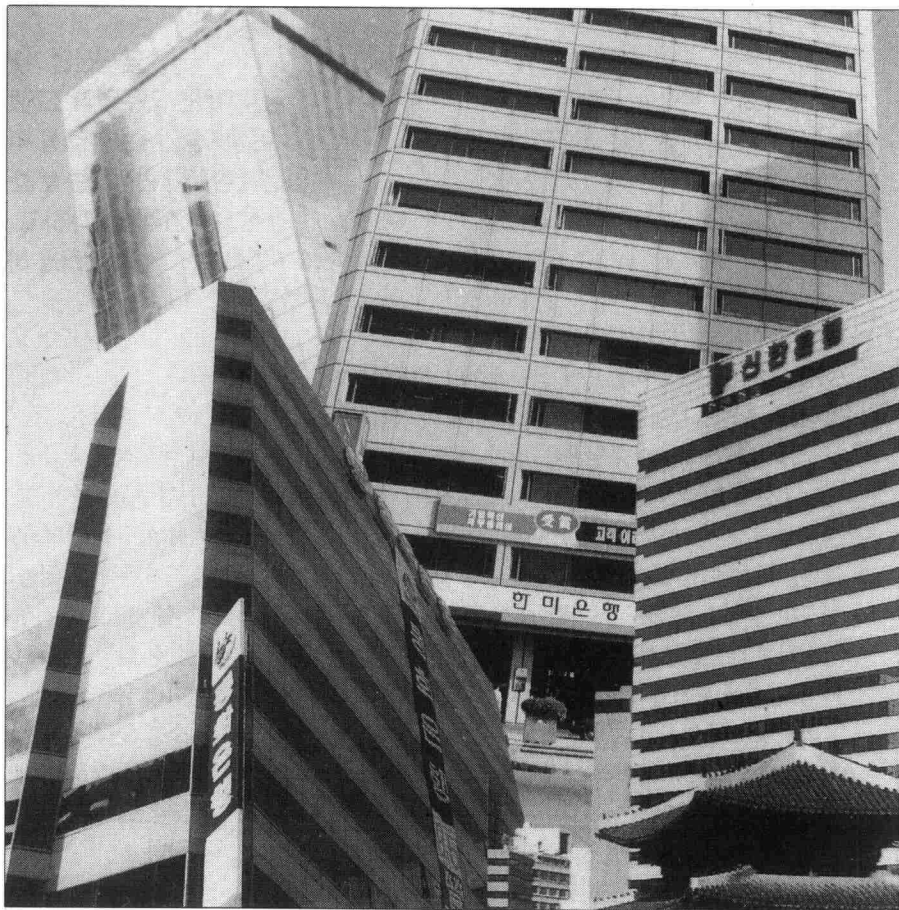
그러나 인위적으로 대형화를 유도해 간다는 것은 자율화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므로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91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간 자율적 합병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94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인가를 폐지하였으며, 95년에는 보험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도 폐지하였다.

95년 정기국회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정부기관의 합병과정에서 중복소유하게 되는 자산 매각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근거도 마련하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96년 6월 발족예정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은행을 합병하는 은행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정부가 합병을 주도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계속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가



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합병을 추진하는 데는 인력감원문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신뢰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엄밀히 분석하고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도 「금융개혁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5개년 계획상 나타난 소유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은, 경제력 집중 폐해 및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하여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배를 제한하고,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금융전업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실적으로는 먼저 92년 지방은행에 대
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신규로 설정
(15%)하고 94년 시중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하였다.

95년에는 10대 계열기업군 또는 대
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투신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 이상의 보유
를 금지하는 한편, 주주 1인이 2개 이상의 투신사에 대해
각각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차단장치도 강화하여
지배주주 및 자기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및 유가증권 보
유 한도를 축소하였으며, 지배주주 및 자기계열 기업군과
는 상호 임직원 파견을 금지하고 자기계열 대출한도를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인사·내부거래 등에 있어
서도 차단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은행의
안정적 경영주체 형성을 위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94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5년에는 지급여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9개 지방 생보사에 대해 16~30대 계
열기업군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였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차단장치의
보강, 산업-금융 분리원칙의 견지, 금융전업기업가의 육성
기반의 조성 등 그동안 유지해온 기본원칙내에서 소유구조
개선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장치 마련

금융산업개편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조급한
금융산업 개편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직접적인 영업규제 대신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건전성 규
제(prudential regulation)나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고, 내부경영정보공시(disclosure)를
강화하는 한편, ALM(종합자산부채관리)기법 도입 등 자
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다.

감독기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개별금융
기관의 도산위험에 대비한 사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는 「금융개혁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별 특성, 시장경쟁 상황,
대외개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해 가되,
장기적으로는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경쟁심화와 부실화에
대한 충분한 보완장치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규모가 충분히 확대될 경우
 전면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금자보호법」(96년 6월 시행)을 제정하여 은행의 예금
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용관리기금의 기능도 보강하
였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조치들이 금융의 경쟁력 제고로 연결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실명제, 금융소득 종합과
세와 같은 정부의 관련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 스스로 기업이 정성과 직업윤리를 확립하
여 금융의 관리·운용기법을 선진화하고 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기하고 불건전 금융관행
의 제거 등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
어야 할 것이다.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수익성과
기업의 참가 가능성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표면
이자율이 일반회사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문제점
도 지니고 있다. 전환사채는 확정이자부채권으로서
의 안정성과 주식전환에 따른 차익을 동시에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 인기가
높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저리의 자금을 조
달할 수 있으며 증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식
으로의 전환 및 사채보유 여부는 전환사채를 매입
한 투자자들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증산을 위하여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영농자재이다.

우리나라는 50년대말까지 모든 화학비료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급불안정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1, 2차

국에서는 농업 부문에서도 환경친화형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양산되고 있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료 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

비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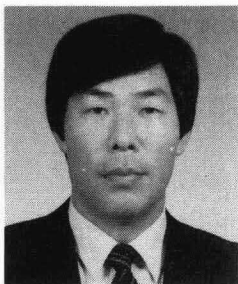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정부주도로 대규모 비료공장을 건설하여 70년대 중반에는 자급을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연간 약 430만t의 비료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280만t(농업용 210만t)을 소비하고, 150만t(전체의 35%)은 동남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비료산업은 식량증산정책에 힘입어 기간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과잉시설을 낳게 되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이를 해외수출로 연결시키면서 내수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새로운 비료개발·원가절감 등으로 농업생산과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해 온 비료산업은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고, 비료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 사용하고 있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92리우환경회의' 이후 선진 각



서종호

농림수산부 농업기계자재과 서기관

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현행 「비료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95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97년 1월부터 시행될 「비료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성 물질의 비료화가 용이하도록 '부산물'의 범위 확대

우리나라 도양은 퇴비 등 유기물질보다 화학비료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유기질 함량이 낮아 지력이 떨어지므로 유

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화학비료)의 균형施肥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산업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산업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물질이 양산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도양에 환원한다면 지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활용가능한 유기성물질로서 가축분뇨 4천만t, 음식물찌꺼기 800만t, 농산부산물 1천만t, 임산부산물 2천만t, 인분뇨 1,600만t 등이 발생되며 이를 비료성분(질소·인산·칼리)으로 환산하면 수치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 특히 이러한 유기성물질은 환경을 오염시키

고, 이를 폐기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산물범위를 확대 세분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부산물비료의 범위를 농업·임업·축산 등 1차 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만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인분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도 비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료공정규격심의의 제도화

비료는 농작물에 영양을 주어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물질로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알맞게 함유하여야 함은 물론 식물에 해를 가하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비료는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하여 유통되도록 하고,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규격'이란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 필요한 부가성분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을 말한다.

이러한 규격설정은 비료원료의 특성, 작물의 특성, 토양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험연구가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와 비료생산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농림수산부에 설치하여 비료공정규격설정 등 비료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제도화하였다.

비료 생산업 및 판매업에 대한 경제행정규제 완화

비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업체간에 자율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이 바람직하므로 비료생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비료판매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비료판매업의 신고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는 등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부산물비료의 범위를 농업·임업·축산 등 1차 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만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인분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도 비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자율화 추세에 부응하여 참여업체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자율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비료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료생산업 및 비료판매업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시설기준 등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위해성 부산물비료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자유화

비료는 물동량이 많은 농자재이므로 수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요시기가 3~6월에 편중(전체의 70%)되어 있어 수급관리가 어려운 품목이므로 지금까지는 비료의 안정적 공급과 수급조절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비료의 수출입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비료도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비료관리법」이 시행되는 97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을 완전자유화하였다.

지금까지 화학비료수입은 비료생산업 허가업체 또는 농협중앙회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유기질비료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비료수입업 규정을 신설하여 비료수입업 등록을 받은 업체는 누구나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종 산업쓰레기 등이 비료 또는 그 원료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중금속오염 및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과 농작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위해성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게 된다.

비료계정의 만능적자 해소

정부에서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비료계정'을 설치하고 62년부터 농협을 통하여 비료를 공급하면서 식량 증산과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비료를 구입원가보다 싸게 판매함에 따라 약 2조원 상당의 비료계정 적자(비료공급 결손액)가 발생하였다.

비료계정 적자는 정부예산에서 보전토록 「비료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재정 형편상 8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를 보전해 준 실적이 없으며, 비료계정 적자에 대한 이자액만도 매년 2천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 비료계정적자액은 한국은행에서 5,700억원, 농협에서 약 1조5천억원을 차입 충당하고 있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료계정 적자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일반 세출예산 외에 '세계잉여금'으로도 비료계정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95년 12월 6일 「비료관리법」 개정 이후 法の 공포와 동시에 시행토록 하여 95년 12월에 세계잉여금으로 3천억원을 농협에 보전함으로써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추곡수매자금 조달, 각종 경제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환경 보호와 비료개발 촉진

비료를 試用하면 토양 속에서 분해되어 작물이 일정량을 흡수하지만 많은 양이 토양 또는 물에 의하여 유실되거나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토양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비료손실은 물론 농업환경 오염을 가져오게 되므로 작물의 생육기간 동안 비료성분이 서서히 분해되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緩效性비료 등을 개발 보급할 경우 비료절약은 물론 비료 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부족한 농촌노동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농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호 이념에 부응하고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새로운 비료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므로 환경친화형 비료개발과 지역별·작물별 특성에 맞는 비료개발의 촉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비료는 농작물에 영양을 주어 증산을 도모하는 반면 불량비료를 사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출하전에 반드시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한 후 검사결과는 2년간 이를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비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검사를 실시케 하여 기준에 위반되는 비료를 생산·수입·판매한 비료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비료의 생산원가 절감이 장기적인 과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비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환경 보전에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산업계·농협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화학비료 소비량은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 등으로 소비량은 2000년대에 가서도 현재보다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비료생산능력이 국내 수요에 크게 웃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수출로 이를 처리해야 하므로 생산업체는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緩效性비료 및 환경보전형 비료개발에 주력하고 기존비료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료의 구매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개발, 물류비용 절감 방안 강구, 新肥種 개발 촉진을 위한 구매제도 개발 등 농업인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료산업은 화학장기산업으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부가가치가 낮은 실정으므로 비료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암모니아 및 각종 가스를 원료로 한 정밀화학제품·화공약품 등을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종합화학회사로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비료의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림**

정 부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의 애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자의 확충과 아울러 민간의 자본뿐 아니라 새로운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民資誘致促進法'으로 줄여쓰)과 동법 시행령을 94년 8월 3일과 94년 11월

로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총 사업비 9조7,387억원)을 선정하였다.

그중 제1호·민자유치사업인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신청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 이미 공사가 착공(95. 12)되었으며,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

「96民資誘致기본계획」을 확정·고시

30일에 각각 제정·공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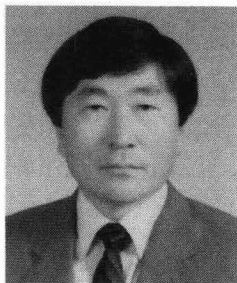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民資誘致事業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과 민간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95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민자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제도시행의 경험과 관련부처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95민자유치기본계획」의 일반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96~98년도에 추진될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수록한 「96민자유치기본계획」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96. 2. 22)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실적과 「96민자유치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의 민자유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등 12개 사업을 95民資誘致事業으로 선정

정부는 95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



김성진
재정경제원 간접자본예산1담당관

로를 이미 지정(96. 2)하였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은 95년도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부산-거제-가덕도간 대교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년간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형화된先例가 없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법적 절

차와 사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는 필요한 점을 감안할 경우, 제도시행 초기로서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1개의 경과조치 대상사업 선정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당시 개별법으로 추진하던 민자사업에 대해 민자유치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자유치촉진법 부칙 제2조의 経過措置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확정하고 2차(95. 5, 95. 10)에 걸쳐 41개의 경과조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경과조치 대상사업에 대해서 「95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부지원사항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추진절차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도록 하되, 총사업비, 무상사용기간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 귀속 등 사업추진의 중요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기존의 협약 조건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하여 95년 6월부터 운영 개시

민자유치촉진법 제29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용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95년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정부는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해 95년에 20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96년에 30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동 기금의 관리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3개 기관이며, 보증총액의 한도는 출연금과 적립금 합계의 15배이며,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100억원 이내이다.

동 기금은 대기업보다는 담보력이 미약한 지방 및 중소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제도시행의 경험과 관련부처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95민자유치기본계획」의 일반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96~98년도에 추진될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수록한 「96민자유치기본계획」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96. 2. 22)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실제로 동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연 0.8%)보다 낮은 보증요율(연 0.6%)을 적용하고 있다.

「96민자유치기본계획」을 확정하여告示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일반지침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주무관청의 자율성 제고

「95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는 투자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96민자유치기본계획」은 등록기준

투자비를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2천억원 미만의 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현행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투자비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의 조정범위와 요인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무관청이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무상사용기간의 조정범위와 요인을 자율적으로 정한 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차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에 대해 종전에는 반드시 당

〈표 1〉 95민자유치대상사업 추진 현황

	95대상사업	진행 상황
건설교통부	천안-논산 고속도로	□ • 95.12. 사업계획수립 - 96. 5. 사업신청
	대구-대동 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 • 연구용역중
	부산-김해 경량전철	
	서울-하남 경량전철	□ • 95. 12. 사업계획수립 - 96. 7. 사업신청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널	□ • 공사착공(95. 12)
해운항만청	경인운하	□ • 95. 12. 사업계획수립 - 96. 4. 사업신청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 • 검토중(공청회 12. 13)
부산/경남 부 천 시	거제-가덕도-부산대교	□ • 95.12. 사업계획수립 - 96. 3. 사업신청
	경인우회도로	
		□ • 96. 2. 사업자 지정 - 96. 7. 공사착공
		□ • 검토중
		□ • 95. 12. 사업계획수립 - 96. 4. 사업신청



영종도와 인천지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4.4km의 2층식 교량 조감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자유치제도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해연도내에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
록 하였으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
획 수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신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위험 관련 제도 개선

「95민자유치기본계획」은 운영기간중 이자율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총사업비가 현격히 변동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총사업비 변동시 무상사용기간과 사
용료를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유치사업의
수익보장 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수익성이 다소 낮은 경우라도 타당
한 부대사업이나 재정지원에 의해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요
건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자사업의 추진필요성은
높으나 자체 수익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민자유치대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다소 완화하였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대한 보장 강화

민자유치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민간의 자본
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
문에 적극 도입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따라서, 「96민자유치기본계획」은 민자유치사업의 계획
부터 운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업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수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
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상사용기간, 통행료,
부대사업 등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민간이 자율
제시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
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개토록
하여 민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계획서 작
성의 편의와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민자유치사업의 공공성 확보

單數의 사업신청자만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기본방침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

능도록 하여 사업신청자의 무리한 요구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해 遲滯償金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공 시기에 준공을 못할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민간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토록 할 수 있게 하였다.

**96民資誘致事業으로 13개 사업,
97~98년도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선정**

민자유치대상사업은 투자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 중장기계획에 부합되고,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되고, 민자유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주무관청이 신청한 사업 중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연도중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구체화된

**96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간), 가덕도 신항 등
13개 사업(총사업비 9조2,295억원)을
선정하였고, 97~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서울-홍천-인제-양양간 고속도로, 울산 신항 등
10개 사업(총사업비 8조776억원)을 선정하였다.**

사업은 96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민자유치 가능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97~98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96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간), 가덕도 신항 등 13개 사업(총사업비 9조2,295억원)을 선정하였고, 97~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서울-홍천-인제-양양간 고속도로, 울산 신항 등 10개 사업(총사업비 8조776억원)을 선정하였다.

96년도 대상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연도중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7~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예비적 검토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중에 추가적인 검토, 조사 등을 거쳐 「97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시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표 2〉 96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

(단위: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건설교통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32.6km	16,870
	구미-옥포 고속도로	56.6km	5,918
	대전-당진 고속도로	94.3km	12,083
	의정부 경전철	14.9km	4,490
해운항만청	부산 가덕도 신항	접안시설 3.2km	22,764
	인천 북항	접안시설 1.2km	2,618
	포항 영일 신항	접안시설 1.4km	6,098
	해안순환도로	3.9km	4,230
부산광역시	제2순환도로 1구간터널 및 접속도로	5.4km	2,235
경기/강원	하남-춘천간 도로	66.5km	6,720
인천/경기	인천남동-도리I·C간 도로	13.3km	2,158
김포군	서울-강화간 도로	26.0km	4,091
울산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4.4km	2,020
계		13개 사업	92,295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시키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어떠한 제도이든지 제도의 마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도의 운영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자유치 제도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면밀한 운영과 함께 그간의 민자유치사업 추진

경험, 외국 사례분석 및 각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정·보완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자유치제도가 아직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에는 그 내용과 취지가 완전히 전달·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이나 민간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제 구축 등 여건조성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지원제도에 덧붙여 추가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國家歸屬施設(제1종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감면, 제1종시설의 무상사용기간중 운영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지원사항들이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는 조세·금융정책,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 등의 관련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시경제 운영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민자유치 활성화라는 목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개발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금융 및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행상 대규모의 장기대출이나 직접금

융에 의한 조달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상업차관도 제1종시설 건설에 필요한 시설재 도입용만 허용되고 있고 민간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現金借款의 허용은 내외금리차가 큰 경제여건에서 통화·환율 등 국내거시경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거래 자유화 정책과 맞추어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범위내 대기업의 여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별도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위험의 분산을 위해서 외국에서 이용되어온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의 도입을 위해 국내도입여건 조성 및 관련제도의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국내에서의 자금조달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외환제도개혁 추진에 따른 해외금융의 접근방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민자유치제도와 사업추진방식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미래의 금리 및 물가상승률 변동을 반영하고 자금조달비용 및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수익률이 보장되는 객관적인 할인율 산정방식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부대사업의 적정 규모 및 부대사업 수익의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건설투자를 방지하고 제조업 등 타분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적정 민자유치 규모를 모색하여야 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참여기업체 업종다변화 장치와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자유치의 속성에 비추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민간의 자율에 기초하여 경쟁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모든 과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제도 발전을 위한 중심과제라 하겠다. **나라경제**

〈표 3〉 97~98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

(단위: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건설교통부	서울-홍천-인제-양양 고속도로	180km	23,000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40만평, 청원군	7,033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27만평, 김천시	6,970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31만평, 장성군	7,577
철도청	수인선 복선 전철화	52.8km	5,710
	교외선 복선 전철화	의정부-능곡, 31.8km	2,000
해운항만청	울산 신항	접안시설 3.5km	17,232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산 해양종합공원	종합여객시설 등	5,500
	해운대 온천지구	면적 22천평	2,112
	퇴계원-동두천간 도로	36.5km(4차선)	3,646
계		10개 사업	80,776

정 부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장기전력수급계획(95~2010년)」을 확정·공고한 바 있다. 정부가 90년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후, 91년, 93년에 이어 세번째로 수립한 계획인 것이다.

전력사업은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하며,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일단 건설에 착수한 발전소는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전력 수요예측과 에너지원별 발전설비계획은 주관성·임의성이 배제되고 이론적·실증적으로 정립된 전산 모형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과 관계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에 따라 수립하

95~2010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서 건설 기간과 투자비 회수 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자본집약적 설비 산업이며, 가스·수도와 같이 지역적 독점성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전력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전기사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GDP, 산업구조, 인구 및 주택수, 가전기기 보급률, 전철 건설계획 등 수많은 경제·사회·문화적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한 후,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전력설비의 설비예비율을 산정하고, 전력설비의 공급신뢰도, 경제성,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입지확보 가능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최적의 발전설비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완성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불확실한 전력수요 예측과 수많은 의사결정 요소들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반영해야



김영준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장

고 있다.

갈수록 입지 확보 등 전력설비의
적기 확충에 어려움 가중돼

최근 들어 우리 전력사업을 둘러싼 국내의 여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2~3% 수준으로 둔화된 선진국과는 달리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전력 소비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최대 전력수요 및 연간 전력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94년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3,297kWh로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일본의 5분의 3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가스·전기 등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촉진되어 앞으로도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유럽·북미와 같이 국가 간에 전력의 상호 용통이 곤란하고, 국토 면적이 협소하여

전원 입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심화된 지역 이기주의가 환경단체의 환경운동과 연계되어 전원시설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의 환경규제 강화 및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과다한 보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전력산업의 환경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등 전력설비의 적기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내외로부터 개방 요구와 경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제 우리 전력사업도 그간 정부의 보호와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에 95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공고

95장기전력수급계획은 95년 5월 장기전력수급계획 추진방안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7개 실무위원회에서 과제별 검토후, 전문가 간담회(95. 10) 및 공청회(95. 12. 14)를 거치고,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95. 12. 22)되어 작년 12월 27일에 확정·공고되었다. 이번 장기전력수급계획은 계획 기간을 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국내외 전력사업의 여건

정부는 95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이 계획은 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을 대상으로 최근 국내외 전력사업의 여건변화와 전력사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한국형 수요예측모델에 따른 수요예측 및 수요관리로 2010년까지 총발전설비용량이 7,955만kW가 되도록 하고 있다.

변화와 전력사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다.

한국형 수요예측모델로 수요예측 및 수요관리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설비계획을 위하여 의미를 가지는 최대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주택보급률·산업구조·제조업 비중 등의 전체를 토대로 하여 부문별 판매 전력량과 부문별 부하곡선을 고려하여 예측한다. 금번 장기계획에서는 수요예측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거시적 예측방법과 미시적 예측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한국형 수요예측모델을 개발하여 93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 여건 변동 및 전력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요예측시 사용하는 주요 입력자료의 변동요인을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최대전력수요는 수요관리 전과 수요관리 후로 구분되는데, 발전소 건설계획은 수요관리 후 최대수요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수요예측의 결과, 판매전력량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5.9% 증가하여 2010년에는 3,656억kWh로 전망되었으며, 수요관리전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6.3% 증가하여 2010년에는 7,085만kW로 전망되었다.

앞으로 전원 입지 및 투자재원 등의 현실적인 제약 완화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에너지자원 및 지구환경보존 차원에서 향후 에너지정책의 기초가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금번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요금구조 개선, 대체냉방기기 및 고효율기기 보급 촉진 등의 수요관리 목표량 521만kW를 반

〈표 1〉 각국별 1인당 판매 전력량과 최대 전력수요 비교

	한 국		프랑스	일 본	미 국
	94년	2007년	93년	93년	93년
1인당 소비전력량(억kWh/인)	3,674	7,539	6,117	6,435	11,305
1인당 최대전력(kW/인)	0.60	1.22	1.21	1.15	2.23

〈표 2〉 판매전력량과 최대전력수요의 증가추이

	(단위:%)				
	94년	2000년	2005년	2010년	95~2010년
판매전력량(억kWh)	1,465 (14.7)	2,393 (8.5)	3,059 (5.0)	3,656 (3.6)	- (5.9)
최대수요(만kW)	2,670 (14.7)	4,356 (8.5)	5,567 (5.0)	6,564 (3.4)	- (5.8)

註: * 괄호 안은 증가율임.

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수요관리후 최대전력수요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5.8% 증가하여 95년의 2.2배 수준인 6,564만kW로 전망되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우리나라 전력수요 성장률이 최근 선진국의 포화 수준(일본 3.8%, 프랑스 3.7%)에 근접하는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소비전력량과 최대전력수요는 현재의 일본 및 프랑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래 예측시 불가피한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수요의 상·하한 폭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전력수급계획의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2010년의 총발전설비용량은

7,955만 kW로 95년의 2.5배 규모

발전설비계획 분야의 설비투자 규모는 수요관리후 최대 전력수요와 적정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설비예비율은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시장 확률을 93년 계획시의 연간 0.7일에서 0.5일로 하향 조정하고, 중단기 수요예측의 오차 및 남북 전력협력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1~2%를 추가하며, 전원 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영·보수 기술 추이를 반영하여 93년 계획시와 유사하게 계획기간 동안 18~20%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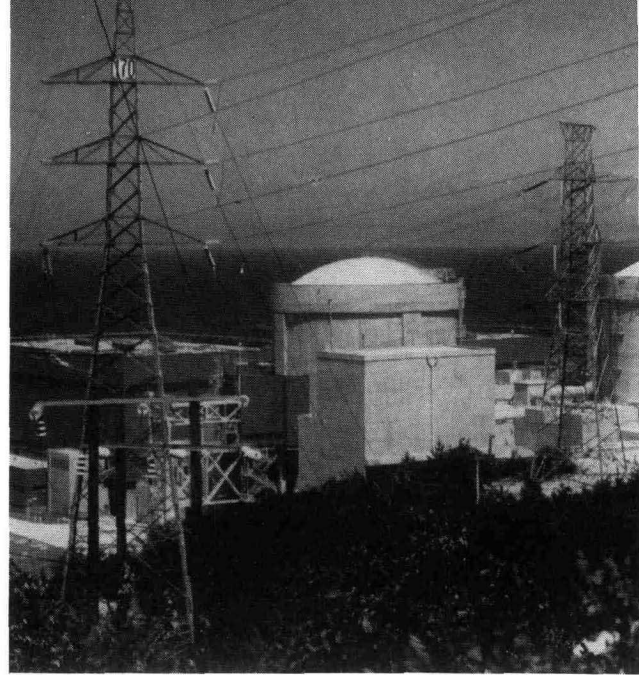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구성은 공급신뢰도, 경제성, 입지, 환경, 투자비와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최근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환경 친화적 전원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탄 화력의 설비 구성을 줄이고, LNG 복합 화력의 설비를 대

〈표 3〉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구성

(단위: 만kW, %)

	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원자력	862 (26.8)	1,372 (26.0)	1,872 (27.5)	2,633 (33.1)
석탄	782 (24.3)	1,583 (30.0)	2,203 (32.4)	2,170 (27.3)
LNG	674 (20.9)	1,420 (26.9)	1,621 (23.9)	2,201 (27.7)
석유	592 (18.4)	514 (9.8)	550 (8.1)	353 (4.4)
수력	309 (9.6)	388 (7.3)	548 (8.1)	598 (7.5)
합 계	3,218 (100)	5,276 (100)	6,793 (100)	7,955 (100)

註: * 괄호 안은 비중임.



폭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환경 보존 및 에너지 안정 공급 그리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표 구성비가 35% 이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부지 확보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 여건 때문에 93년 계획보다 낮게 반영되었다.

한편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원 개발에 따른 투자재원,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민자발전사업의 대상 물량을 93년 계획시 4기 180만kW에서 15기 635만kW로 대폭 확대하였고, 대상 전원도 석탄 및 LNG 복합 화력에서 양수 발전 설비까지도 포함시켰다. 또한 전력사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중인 130만kW급 차세대 원전 4기를 2007년부터 준공하고, 30만kW급 신석탄발전방식과 5천kW급의 대체 에너지 발전 방식을 각각 2005년 및 2003년에 준공하기로 하였다.

발전설비계획 결과, 9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기간 동안 원자력 19기 1,930만kW, 석탄 화력 29기 1,550만kW, 석유 화력 4기 115만kW, 복합 화력 41기 1,755만kW, 수력 및 기타 29기 350만kW 등 총 122기 5,70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36기 620만kW의 발전소를 폐지하여, 2010년의 총발전설비용량은 7,955만kW로서 95년 설비 용량 3,218만kW의 2.5배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계획기간 동안 전력수급은 안정될 전망

장기 전력수요와 발전설비계획을 종합한 장기전력수급

계획을 보면, 계획기간중 18~20%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97년까지는 발전소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가 어려우므로 수요관리 강화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별·계절별 요금구조 개선 등으로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상증자 실시 및 정책금융의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수요관리·民資發電·재원조달·환경·원자력·입지·기술개발 등 7개 부문의 시책을 수립하였다.

수급계획의 실효성 확보 위해 수요관리 등 7개 부문의 시책 수립

이상에서 살펴본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관리·民資發電·재원조달·환경·원자력·입지·기술개발 등 7개 부문의 시책을 수립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간별·계절별 요금구조 개선, 하계휴가조정 및 자율 절전 등에 의한 요금제도 개선, 빙축열 및 가스 냉방기기 보급 확대, 기기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우선 구매, 가전기기 최저 효율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계획기간중에 총 46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인바, 민자발전 확대 및

한전의 경영효율 개선 등을 통한 신규 투자 소요의 최대한 억제, 유상증자 실시 및 정책금융 확보 등 한전의 자금 조달능력 강화, 적정 투자 보수를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의 적기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신규 설비에 탈황·탈질·분진 설비 등 공해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설비도 점진적으로 국내 환경규제 기준에 맞게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신규 전원입지 확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원입지 제공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시책을 다원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여건에서 불가피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자력발전 사업, 전력기술 개발, 송배전 부문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여 전력 수급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상·하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발전설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상한 수요시는 설비예비율 1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며, 하한 수요시는 설비예비율 25.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소 건설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

〈표 4〉 장기 전력수급 전망

	판매전력량 (억kWh)	최대전력 (만kW)	설비용량 (만kW)	설비예비율 (%)
96년	1,794	3,260	3,572(3,570)	9.6
97년	1,956	3,548	3,995(4,145)	12.6
98년	2,109	3,839	4,555(4,657)	18.6
2000년	2,393	4,356	5,196(5,276)	19.3
2005년	3,059	5,567	6,618(6,793)	18.9
2010년	3,656	6,564	7,820(7,955)	19.1

註: * 괄호 안은 연말 기준임.

〈표 5〉 투자재원 소요 전망

	92~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계
원 자 력	95,860	103,478	41,447	240,785
수 화 력	129,852	67,677	26,954	224,483
(민자설비)	(4,530)	(23,017)	(10,200)	(37,747)
계	225,712	171,155	68,401	465,268

(단위: 억원)

註: * 95년 불변가격 기준임.

세 계는 지금 통신·방송·정보기술의 가속적인 융합·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 일대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WTO기본통신 협상의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간 전략적 제휴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에 의해 93년부터 운용해 오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폐지되고, 동 기금의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신설된 정보화촉진기금이 승계하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종전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비교하여 그 지원용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즉, 종전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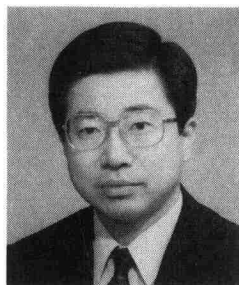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방향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전반에 걸친 경쟁과 개방을 통해 우리 정보통신의 경쟁력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잘 갖춰진 고도화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중심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에는 그동안 수년간을 끌어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에 따라 국가 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등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올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개시

올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금이 1월부터 신설·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공종벌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었지만,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정보통신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조달 범위도 확대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에 주된 재원이었으나, 정보화촉진기금은 이 외에도 신규사업 재원을 재특예산 등 정부의 출연금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도와 재원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기금을 두 개의 계정으로 구분·설치하였다. 일반계정은 국가사회 정보화촉진 등 범국가적인 정보화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연구개발계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토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으로의 개편·확대는 종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비교할 때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정보화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첫해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
대에 대비한 지역의 정보화, 국민의
편익증진과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공공부문의 정보화 그리고 우리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보화
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범국가적인 정보화추진 시책을 착
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시스템적인 특성을 살리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속히 융합하
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방송·정보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보산업 육성지원시책을 펴나갈 것이다. 또한 컴퓨
터 신세대기업군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집중 지
원하고, 연구개발에 경쟁원리를 확대해 나가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
체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본격화하고, 정보통
신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한 경쟁확대 및 규제완화 시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과 세계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추진되
는 각종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금년부터 국가사회
의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에 대한 신규 지원이
개시되고, 기금사업 규모도 확대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특
징으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 등 정보화촉진 지원에 80억
원, 소프트웨어산업 및 멀티미디어산업 등의 기반조성 지
원에 160억원 등이 새로이 반영되었고, 예비비를 제외한
기금사업 전체규모도 95년도의 4,077억원보다 1,426억원
이 증가한 5,50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시 최고 15점까지 가점을 부
여하여 금년도 총 융자대상금액 2,860억원 중 75% 수준인
2,145억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도에는 총 융자금액 2,205억원 중 70%인 1,546억원이 중
소기업에게 지원된 바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방송 등 상대적으로

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이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비해
지원용도가 대폭 확대되고, 재원조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용도와 재원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설치됨으로써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금년도에 총 650억원(게임소프트
웨어 50억원 포함, 융자 600억원, 출연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멀티미디어 분야에는 총 40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금년중 새로이 허가될 통신사업 분야의 소요시스
템 및 단말기를 적시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개발
을 지원코자 한다는 점이다.

개인휴대통신(PCS)·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전화(CT-2) 등 신규허가대상사업의 소요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60억원의 융
자금을 할애할 계획이다.

다섯째, 기금의 조기지원을 방침화하였다는 점이다.

융자사업의 경우 1차사업을 지난 1월에 공고하여 3월말
에 지원 개시하고, 2차사업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지원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선정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후 45일 이내에 지원사업자를 확정할 계
획이다. 이럴 경우 지원시기를 전년도보다 사업별로 약 1
개월 정도 단축시키게 된다.

끝으로, 업체의 대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취급은
행을 계속 확대하고, 기술신용보증회사의 활용을 적극 유
도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평소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취급은행(현재 23개 은행)을 계속 확대·지
정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활용유도 등 기술력 담
보대출의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용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은 그 지원방식에 따라 출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운용되고 있다.

우선 출연사업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사업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각각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주로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공고후 신청서를 접수, 심사·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1차 융자사업대상은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사업, 정보통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이미 지난 1월 사업공고를 거쳐 2월 접수를 마감하고 3월말부터 지원되고 있다. 다만,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사업의 경우는 연중 수시 접수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2차 융자사업대상은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과 멀티미디어산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4월중에 사업공고하여 6월말에 지원개시할 예정이다.

융자사업별 지원조건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금지원의 절차는 일간경제지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약 20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금관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서 2단계에 걸쳐 사업분야별 자금배분 및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책적 타당성과 중복지원 등 하자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짓게 된다.

기금의 대출은 본 기금의 23개 취급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업체별로 자체의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까지 대출원리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2개월간

의 기간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정보통신 설비구입 등

다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

금년도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융자사업의 경우는 다음 다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용 또는 정보화추진용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원규모 410억원에 대해 1,720억원의 신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금년도에는 사업규모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정보통신 관련업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구입이나 시설 개체를 희망하는 업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1월 사업공고후 심사·선정을 거쳐 3월말부터 지원되고 있다.

둘째,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사업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주전산기(TTICOM)의 보급확대를 위해 임차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약 100대분의 지원자금으로 240억원을 책정하였다.

이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한국통신진흥(주)에게 주전산기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한국통신진흥(주)는 구입한 주전산기를 최종 이용자들에게 임대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1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계속 접수·지원중에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 관련업

<표> 기금융자사업 지원조건

(단위:억원, %)

	사업명	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	비고
정보통신설비 현대화사업	•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 개체 지원	600	6.5	5년 이내 (2년거치 포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	240	6.5	5년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1,100	6.5	5년 이내 (2년거치 포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국책연구개발 지원	1,050	6.0 *	5년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6.0 *	(2년거치 포함)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110	6.5 6.0 *	5년 이내 (2년거치 포함)	• 업체(과제)당 10억원 이내

註: * 중소기업 우대금리임.

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의 개발을 스스로 제안·신청하면 그 과제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도에 지원규모 950억원에 1,674억원의 신청이 들어와 금년도에는 1,1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역시 지난 1월 사업공고되어 3월말부터 지원되고 있다.

넷째, 국책연구개발 융자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관련 공통·기반기술 등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거나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방식은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해당사업 참여지정업체들을 지원하고, 기타 국산전전자교환기(TDX) 개량모델 개발 등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공고후 신청을 받아 심사·지원하게 된다.

작년도의 경우 850억원 지원에 2,199억원의 신청이 쇄도하여 금년도에는 사업규모를 1,050억원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공고하여 6월에 지원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멀티미디어산업 융자지원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의 확대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멀티미디어 전문 중소기업들의 창업이나 공동연구개발에 50억원을,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 지원에 60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사업은 정보화촉진지원사업 등 네 개의 사업에 지원
출연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금년도 신규사업인 정보화촉진지원사업의 경우, 광역단위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지원 등에 30억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40억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역시 신규사업인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영세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에게 입주공간, 공동연구개발시설, 전시 및 유통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2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은 지원방식에 따라 출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에 출연사업의 경우 정보화촉진지원사업 등
네 개의 사업, 융자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등 다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차연도 사업으로 금년에 1,470억원의 사업비가 출연될 예정이다. 동 사업비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선도시험망 구축 및 운영, 공공응용서비스 개발, 각종 시범사업 추진 등에 지원될 것이다.

끝으로, 94년부터 추진중인 국책연구개발 출연사업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이나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초·기반기술 개발, 부품기술개발, 정보통신 정책연구, 정보문화 확산사업 등에 총 79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의 출연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지원대상기관을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정책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후 수행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쟁도입의 측면에서 점차 공모지원방식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9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의 중점 운용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금년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이 새로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우리나라 정보화추진 역사상에 일대 전환점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한다.

비록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정보화촉진사업 등 신규사업 분야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자금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기금이 우리나라 정보화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 4월호

95 년은 환경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 95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쓰레기종량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연일 주요 신문·방송에서 이를 대서 특필하였다. 봉투공급이 제대로 안된 지역도 있었고,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지적 등의 많은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전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쓰레기종

극적인 참여를 한 우리 국민 모두의 저력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목적은 종전에 재산세나 건물의 면적 등에 의한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를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종량제의 내실화

량제는 당초 우려보다 더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서서히 정착

시범실시 8개월 만에 전국실시는 무리라는 일부 지적과 우려 속에서 추진한 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당한 외형적 성과와 함께 시행 1년 만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쓰레기종량제를 '쓰레기혁명', '시민생활혁명'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언론까지도 성공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인터뷰가 쇄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매우 인색하였던 일본언론들까지 우리나라의 종량제를 대서 특필하였다.

종량제가 시행 1년 만에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의 생활양태까지 바꾸면서 서서히 정착되게 된 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쓰레기 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환경미화원·부녀회·노인회·소비자·환경단체들의 정성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연초부터 종량제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動因이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적



신현국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하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그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확충하고 對국민 청소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시행 1년 만에 쓰레기 27% 감소,
재활용품 35% 증가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 증가에 있다. 이는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시민 각자의 노력덕택이라 사료된다. 15개 시·도의 1년 시행 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종량제 시행전보다 27% 감소(4만9,191t/일→3만6,052t/일)하였고, 재활용품은 35% 증가(8,927t/일→1만2,039t/일)하였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감소율이 높았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1.05kg으로 감소하였다.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기

업 모두가 감량화·재활용에 노력하고 협조한 덕분에 매년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였고, 종량제 시행으로 이제 쓰레기발생량 1위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1kg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쓰레기발생량을 계절적으로 비교한 결과, 여름철이 음식쓰레기 증가 등으로 다른 계절보다 약간 높았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쓰레기 종류별로는 가정쓰레기가 감소한 반면, 사업장쓰레기는 계속 증가하여 94년 1일 8만9천t에서 95년 10만t으로 증가하여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 4만8천t의 2배 수준이다.

쓰레기성상별 변화를 보면, 음식쓰레기의 구성비율이 94년 31%에서 95년에는 3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종이·플라스틱 등은 종량제 시행전보다 구성비율이 감소하였다.

재활용품은 현재 종이·고철·캔·병·플라스틱 등 5종으로 분리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특히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종이·고철·캔·유리병은 민간재생업체 등을 통하여 발생량 대비 30~50% 정도로 비교적 잘 처리되고 있으나, 플라스틱은 재생처리시설 부족으로 13% 수준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및 자원재생공사 집하장에 일부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구당 쓰레기봉투값은 평균 2천~3천원으로 종량제 시행전의 가구당 쓰레기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300kg 미만의 사업장쓰레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증가로 자치단체의 쓰레기수수료 수입은 시행전인 94년보다 2배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 쓰레기 재정자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15개 시·도의 1년 시행 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종량제 시행전보다 2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35% 증가하였다. 또한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1.05kg으로 감소하였다.

립도가 94년 14%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즉, 95년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된 총예산 약 1조원 중 종량제 봉투값으로 30%에 해당하는 3천억원이 충당되었다. 늘어난 재정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매립지에 자동계량기 설치 및 청소장비 현대화로 쓰레기 관리체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물건을 살 때도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제품 선호

종량제 시행은 이상에서 설명한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쓰레기행정서비스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총괄적으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즉,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제품과 리필(refill)제품을 선호하고, 기업에서도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TV·냉장고를 살 때 스티로폼 등 포장재를 떼어 놓고 내용물만 가져오고, 기업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 부피가 적은 포장재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쓰레기행정에서 비즈니스마인드(business mind)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활용품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재생산업의 시장점유율(market power)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증가로 연간 처리비 2,300억원과 자원절약 700억원 등 총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토지 이용 측면에서 매립지 20만평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쓰레기 등을 모두 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쥐·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이 감소하여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었다.

〈표〉 쓰레기종량제 시행효과

(단위: %, kg/일)

	쓰레기 감량률	재활용품 증가율	1인당 발생량
평균	26.7	34.9	1.05
특별·광역시	21.4	51.5	1.20
도	31.7	14.1	0.92

참여열기 높았으나 재활용시설 등 공공 부문의 뒷받침 미흡

반면, 부정적인 평가로는 국민들의 참여열기는 높았으나 음식쓰레기에 대한 감량 및 사료·퇴비화 기술부족으로 음식쓰레기는 별로 줄어들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음식쓰레기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에서는 약 50% 가까이가 음식쓰레기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음식쓰레기는 소각시 완전연소가 잘 안되어 보조연료가 필요하고 매립처리시 악성침출수를 발생시켜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플라스틱 재활용시설 부족으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플라스틱류가 원활히 재생처리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역수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쓰레기를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함에 따른 비닐사용량의 증가(비닐봉투 사용량 연간 2만5천t)로 인한 매립지 지반불안정화 등 2차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의 상존 및 형광등·건전지 등 가정에서 나오는 유해쓰레기 수거체계의 확립이 미비한 실정이다.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충,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등 종량제의 하부구조를 다지는 작업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은 모두 공공의 몫이다.

문제점 해결 안되면 시행의 퇴색할 우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량제 시행 1년 만에 외형적으로는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하였으나 재활용시설 부족 등 내면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의 종량제 성공은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종량제는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된 것들이 최종 제품으로 완벽하게 재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눈앞에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줄어 들고, 재활용품이 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몰래 태우거나 불법처리로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쓰레기가 적정처리되지 못하고 적체 또는 부적정처리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할 뿐이다.

실제로 95년 4/4분기에 쓰레기배출량이 다시 늘어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전문가들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또다시 쓰레기가 증가하여 종량제 도입 의의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쓰레기 및 생활쓰레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문제의 해결 그리고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대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각오로 '쓰레기와의 전쟁'에 임하여야만 쓰레기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실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도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량제에 대한 국민참여 분위기를 다시 확산시키고 음식쓰레기·플라스틱 재활용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종량제의 내실있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종량제 재점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첫째, 종량제 재점화를 위한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주부·고물상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을 강구하고, 중앙과 지방에 '종량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종량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종량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다.

둘째, 음식쓰레기에 대한 감량화대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음식쓰레기줄이기 추진본부'를 환경부에 설치하여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조, 음식쓰레기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난지도 및 의왕시에 1일 처리능력 15t 규모의 음식물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97년부터 퇴비화기술을 각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대책 적극 추진

셋째, 늘어만 가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95년에는 1일 300kg 미만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 폐기물만 종량제 적용대상이었으나, 96년에는 1일 300kg 이상의 다량사업장폐기물도 종량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재활용품의 철저 분리배출과 쓰레기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하여 1회용

품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단속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등 포장재 사용량을 적극 억제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회수목표율을 확대하는 회수·재활용시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00t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목표제를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우선 96년에 섬유·석유정제·플라스틱제조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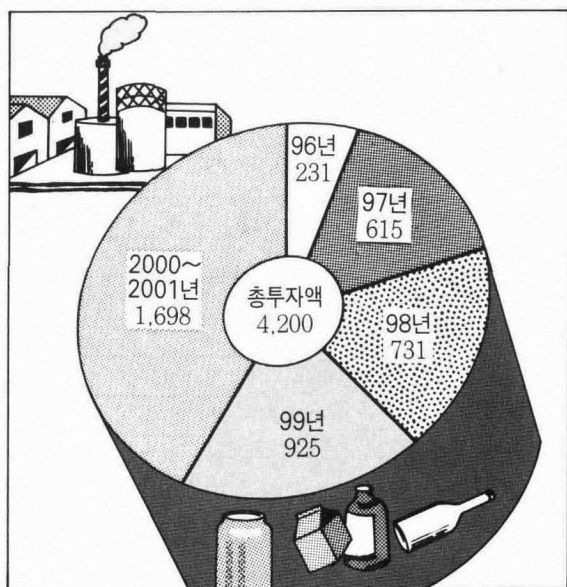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대폭 확충

넷째,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96년에는 231억원을 투자하여 폐플라스틱 선별·파쇄시설 등 9개 재활용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적체가 되거나 처리가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역점을 두고 2001년까지는 총 4,20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재생처리시설 및 재활용비축시설 66개소를 설치하여 공공 부문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300억원

〈그림〉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계획

(단위:억원)



쓰레기종량제는 시간이 흐름수록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쓰레기에 대한 감량화대책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대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종량제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씩 장기저리 융자지원하고 녹지지역 및 도시주변에 민간재활용시설의 입지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유해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확립

다섯째, 형광등·건전지 등 유해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예치금대상품목인 건전지는 역판매망을 이용한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형광등은 지역별 수거망을 자치단체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여섯째, 비닐봉투 구조 및 재질 개선을 위하여 G7프로젝트 일환으로 씌는 비닐 연구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종이봉투 사용방안 등 비닐봉투에 대한 대체방안을 관계전문가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일곱째,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부녀 및 노인회원, 아파트수위 등을 명예단속원으로 위촉하여 전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경찰 및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강력 단속하여 종량제 완전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제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일반의 인식이나 공무원·주민 모두의 관심이 전보다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약해지는 시점이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다른 많은 민원이 분출하고 있어 이들의 관심이 쓰레기문제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량제가 아직 완전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우려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원래의 의도를 살리고 정책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는 정부·국민·언론·민간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안

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식품원료의 관리 · 제조 · 가공 · 유통 · 보관에서부터 소비자가 구입하여 섭취할 때까지의 각 단계마다 충분한 위생관리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식품의 적정제조기준 등을 설정하여 식품의 제조 · 가공 등에 대하여 위생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에 의하여 국내 및 수입식품의 과거와 현재의 제조 및 위생관리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고, 국내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利點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4년 8월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식품행정쇄신대책을 발표한 후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업활동의 육성 · 확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

식품산업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도입

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 이후 세계 각국은 식품의 수출입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규격을 채택하여야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품인 경우 위해평가에 의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수제도나 제조물배상제도를 점차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종전의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제품검사방법이나 정부단속기관에 의한 시설 위주의 전통적인 감시방법과 경험적인 위생관리방식만으로는 충분한 식품의 위해방지대책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각 공정별 중요관리 장소에 감시활동을 집중시킬 수 있고,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주며, 업계의 책임과 활동을 높여줄 수 있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도입은,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화학적 ·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식품확보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EU(유럽연합)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일부 식품에 본 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이제 HACCP제도는 식품의 안전을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국제사회에 통용되어 가고 있다.

특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통한 관리는 공정단계별 중요관리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이므로 기록 확인



김진수
보건복지부 식품관리과장

서 본 제도의 시행근거를 95년 12월 28일 「식품위생법」 제32조 1항 및 2항에 신설하는 등 법제화한 바 있다.

제도 도입시 식품의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

HACCP제도에 의한 관리방식은 종전 방식인 최종검사 대신에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공정 · 출하에 이르기까지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의 위해에 관련된 중요한 관리

기준을 계측기기에 의한 공정관리에 바탕을 두고 그 데이터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등을 공정별로 종사자가 기록하는 방법이다.

HACCP제도는 제조되는 공정에 대하여 유해가능성 여부를 알기 위하여 위해분석을 하고, 위해를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제조기준을 설정하며, 설정된 제조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시를 할 뿐 아니라 제조기준을 벗어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방법을 기록 ·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제도의 구성항목을 식품마다 작성, 실시결과를 서류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제조시설의 세정 · 소독계획과 실시기록, 중

사자의 교육·훈련계획과 실시기록의 보관 등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를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

HACCP제도는 도입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으며,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학성을 바탕으로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에 높은 신뢰성을 가져다 준다. 또한 문제발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힐 수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원료에서 제조·가공 등의 식품공정별로 모두 적용되므로 종합적인 위생대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중요 제조기준이 설정된 이후에도 계속 수정·보완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더 높은 품질의 식품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대책 측면에서도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 검사이 본 제도에 근거하여 보관되고 있는 기록의 조사를 통하여 업체의 위생관리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수입식품의 경우 현재의 방식은 수입되는 시점의 극히 한정된 식품에 대한 안전성만 체크되지만 본 제도 도입시에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나 앞으로 생산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HACCP 제도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식품임을 확신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한 감시방법으로서도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호주·뉴질랜드·유럽에서는 일부 식품에 대하여 제도를 도입·실시

본 제도는 이미 호주·뉴질랜드·유럽의 일부식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본 제도 도입을 위한 팀 구성과 우유 및 유가공업체 도축장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5월 「식품위생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식품제조업체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금년 5월부터는 우유 및 유제품과 식육 및 식육제품을 HACCP제도 적용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닭·오리를 비롯한 가금육처리장에 대하여서는 본 제도의 원칙을 적용한 위생관리를 93년부터 이미 법제화

HACCP제도에 의한 식품위생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 또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식품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민건강보호의 차원에서 적극 연구·검토되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HACCP제도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본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품업체의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 식품업종에 대하여 96년 9월 강제실시를 목표로 38개 식품群에 따른 실시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93년에는 연방정부에서 식품제조업자 및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며, 94년에는 관련공무원 및 감시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정부·민간기업이 HACCP제도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류 및 어류제품, 식육 및 가금육과 그 제품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도로 도입하기 위하여 94년 8월에 식품공장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HACCP제도의 강제 도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HACCP제도는 법적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간기업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미국내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민간 차원에서 이 제도에 의한 식품의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95년 수입식품 전반에 대하여 HACCP제도를 적용하도록 결정하고, 특히 어류 및 그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수출업체에 이 제도에 의해 관련식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 설비의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는 HACCP제도를 국제 식품위생관리제도로 정식 채택(93년)하고, 각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0년까지 제도의 전면실시를 목표로 시범적용중

HACCP제도에 의한 식품위생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 또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식품산



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국민건강보호의 차원에서 적극 연구·검토되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HACCP제도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본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품업체의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HACCP제도 관련 연구현황을 보면, 92년도에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있어서 적정제조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93년도에는 식육햄·소시지의 제조단계별로 어떤 제조공정이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위해분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94년도에는 식육햄·소시지에 대한 제조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식품산업체에 시범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95년도에는 어육제품에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과 함께 식육햄·소시지 제조업체에 시범적용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적용대상을 전 식품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차적으로 연구사업과 시범적용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95년 10월에 식육햄·소시지에 HACCP제도의 시범적용을 위하여 식육햄·소시지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제 현장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별 문제점을 파악, 개선 내지는 보완하여 앞으로 전 식육업체 및 타

업종으로 확대적용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적용업체는 롯데햄·우유, 미원농장, 제일제당 백설햄, 진주햄 4개사이고, 시범적용을 위한 작업으로는 위생제조기준 작성, 각종 관리서식 제정 등이며, 업계의 의견수렴 후 관련기준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적용범위는 업체별로 햄 및 소시지로 하고, 시범사업기간은 95년 10월 1일에서 96년 6월까지로 하였으며, 시범기간중 현장에 적용상의 문제점, 생산시설, 공정별 위해요인, 종사자의 위생교육, 관리 및 보관, 창고시설 등의 현안과제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실무작업반과 자문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토대로 관련기준 등을 검토, 보완하여 식육햄·소시지 제품의 HACCP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전 식육햄·소시지 제조업체에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정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병행

HACCP제도가 우리나라 식품업체에 폭넓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영업자에 대한 본 제도의 필요성 인식 고취, 본 제도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교재개발 등 교육훈련기회 마련, 본 제도에 대한 실행위원회 구성 등 기술지원체제

구축, 법적 강제력 규정, 시행 기업체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식품제조업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본 제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어, 본 제도의 방향설정을 협의하고,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도록 올 상반기 중에 위원회 구성을 계획중에 있다.

둘째, 식품제조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 교육훈련, 이해평가, 중요관리기준 및 규격기준 정비에 관한 실무작업반에 업체의 품질과장 또는 팀장을 구성원으로 편성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처리하게 하며, 업계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업종별 대표사를 지정하는 한편, 동업자 협회도 실무작업반에 포함시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셋째,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본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홍보자료 작성을 위하여 HACCP제도 실시에 대한 외국 및 우리나라 연구사업결과를 토대로 기초편·응용편 및 감시지침 등을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정부 관련기관, 산업체 종사자, 책임자 및 소비자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식품산업체가 본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업체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업계에서 제시하는 본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요구사항으로는 도입업체에 대해서 HACCP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업체 지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 소비자에 HACCP 실시업체 홍보 허용, 시설·설비를 위한 저리의 시설·설비자금 융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본 제도를 추진하는 핵심요원인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96년 3월부터 HACCP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식품산업체 종사자에 대하여는 식품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HACCP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 안전성 확보계획 속에 이 제도를 중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 및 학계에서 이 제도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은 물론 국제 기준규격 조화 측면에서도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HACCP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 안전성 확보계획 속에 이 제도를 중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 및 학계에서 이 제도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은 물론 국제 기준규격 조화 측면에서도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HACCP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 안전성 확보계획 속에 본 제도를 중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추진을 지도·감독하게 될 위생감시원의 자질도 동시에 향상시키고, 본 제도가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나 안전한 식품의 공급 측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생산을 위한 제도라는 업체의 인식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계속 설득하며, 또한 본 제도의 정착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종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소 및 학계에서 본 제도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은 물론 국제 기준규격 조화 측면에서도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조지원체제가 유지되고, 감시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한 기존의 식품위생감시방법 대신 문제기업·문제식품에 대한 주요공정을 중점 감시함으로써 감시의 과학성을 기할 수 있으며, 식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불량제품을 발견하게 되어 완제품이 되기 전에 시정이 가능하게 된다. 불량식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본 제도 도입에는 정부의 지원,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소비자의 HACCP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하는 바대로 본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 수준은 한단계 더 선진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며,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 보건의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농림부**

우

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연안국가로서 국토의 3배에 달하는 넓은 대륙붕과 1만2,700km나 되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5차에 걸친 경제개발 수행 과정에서 임해공업단지 건설, 임해발전소 건설, 간척매립사업의 추진, 양식장의 건설 등 많은 연안자원과 공간

을 연안역 육역한계로 하였을 때 전 국토면적의 17%인 1만7천km²가 연안역에 포함되며,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인 영해의 범위를 해역한계로 하였을 때 전 국토면적의 70%인 약 7만km²가 이에 해당하여 총 8만7천km²의 면적이 연안역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연안역은 항만, 어항,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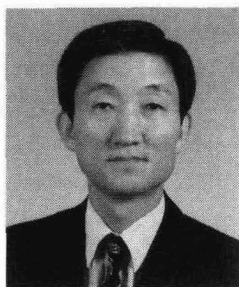
沿岸域 통합관리체제의 구축

이 개발되었으며 沿岸域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어 왔다. 국토의 66%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평야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국토의 구조적 한계극복을 위한 대체용지로서 연안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용지로서의 沿岸域 개발
필요성 높아짐

연안역(Coastal Zone)이란 해안선을 중심으로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특수한 자연환경대로서 인근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부와 육지부의 활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양 부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안역은 지리적으로 특수한 위치와 자연환경대를 형성하고 있어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해양공간이라는 포괄적 의미로부터 분리하여 특별권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연안역의 범위는 각국의 연안역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일반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해안선에 인접한 시·군



이석암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계획과장

뿐만 아니라 간척·매립과 생산·생활·레크레이션 등 다종의 연안활동이 결합되는 입지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반면 연안역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로부터는 해일 등에 의한 해안재해가 집중되고 배후육지로부터는 생활하수·산업폐기물·농약 등의 유입으로 전체 해양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의 선진연안국들은 연안역을 통상의 바다나 육지와는 다른 '제3의 국토공간'으로 이해하여

자국의 연안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동남아시아 등 발전도상국에서도 적극적인 연안역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沿岸域을 '제3의 국토공간'으로 간주

국가 차원의 연안역관리를 위한 종합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연안역관리법」(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 1972)은 연방연안역관리법과 각 沿岸州의 연안역관리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법과 주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연방연안역관리법의 목적은 연안역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의 보호·보전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안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설정보다는 각주의 개발계획을 검사·승인·지원함으로써 연안역의 이용이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가이

익을 반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미 승인된 州계획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향후에 행하여지는 연안역관리사업이 주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안역의 주요관리기구를 보면 주무장관은 상무장관이 되고, 실무는 해양대기청(NOAA)과 연방해양연안자원관리국(OCRM)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안역관리의 주체를 주정부로 설정하고 각 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안계획에 대해 교부금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연안역법」(The Shores Act, 1988)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연안역의 자원배분, 토지이용 및 각종 인·허가와 지방정부의 업무 및 지방정부간의 상충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에코도르는 연안육역이용행위의 규제, 해안서식처 관리, 연안양식 진흥 및 수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역관리를 위한 대통령령(President Executive Decree No.375, 1988)을 제정하고 5개 권역으로 연안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각기 독립된 특정 연안역 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연안역 이용에 관련된 계획 및 관리제도와 연안역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법률(시안, 1980)을 마

연안역 통합관리의 근거법률인 (가칭)「연안역관리법」을 97년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연안역관리법」은 개발과 이용·보전의 우선순위 및 개발허용의 원칙, 국가 및 권역별 연안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및 부처간 업무조정절차, 연안역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해안재해 예방대책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다.

련하여 이를 검토하여 왔으며, 중국에서는 8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전국 연안역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해양환경보호법」(1989)을 제정함과 아울러 90년부터 연안역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연안역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81년 해양부를 신설하여 해양조사·개발·관리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법」(1986)을 제정하여 동법의 규칙에 연안역 용도지역 설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주도의 강력한 연안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議題 21」은 각국에 沿岸域 통합관리방안 수립을 권고

70년대와 80년대에 개발된 연안역관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단일 분야의 연안역 쟁점들(예 : 해안침식, 수산업, 해안토지 이용 등)을 다루고 있었으나,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단일분야 중심의 연안역관리 프로그램들이 복잡한 연안생태계를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연안역 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의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연안역 통합관리란 '연안역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목적으로 환경자원, 사회문화자원,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통합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 육역과 해역의 통합을 근간으로 한 수산자원·광물자원·에너지·해운·폐

〈표 1〉 각국의 연안역 범위

	육지측	해안측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200피트(60m)	3마일(4.8km)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인접지역	3해리(5.6km)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지고조정선5마일(8km) 산지 최고지점	3해리(5.6km)
브 라 질	지역특성에 따라 설정	200해리
스리랑카	지역특성에 따라 설정	200해리
프 랑 스	지역특성에 따라 20~50m 내외	12해리
일 본	해안선 중심 50m	만·간조시 기준 50m
중 국	해안선 기준 10km 이내	수심 10~15m 내외
한 국	연안시·군(잠정)	12해리(잠정)
인 도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의 빈지 500m 내외	



기물처리·관광 등 연안관련 모든 분야별 계획을 통합하는 것 외에도 관리적 측면에서 국제조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관리주체들간의 수평적·수직적인 통합과 관리적 요소로서 분석·설계 등 계획단계에서의 전략수행, 모니터링, 평가 등의 실행단계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연안역의 지속적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역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연안국들이 자국의 연안역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世界銀行·FAO·UNE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연안국가들은 연안역 통합관리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관리지침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안역 이용과 관리체제는 비효율적·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연안역관리법」과 같은 국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사항별로 연안역이 관리되고 있고 연안역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안조사를 비롯한 개발·보전 등 연안역의 이용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연안관리의 기초가 되는 연안조사 부분을 보면 일부항목에 있어서는 연차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조사자체에 연속성이 없고, 소관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단편적인 조사와 중복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조사내용과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조사범위 또한 일부 이용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용도별 연안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전국적 차원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연안역 일부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육지부분으로서 영해내의 해수면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 외에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해양개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50여종에 달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연안역이 관리되고 있으나 개개의 법령이 추구하는 '기본계획'에 의하거나, 행위제한 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개별법상의 해수면관리는 일반적인 행위규제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연안관리에 있어서 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연안에 관한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개별목적 위주의 선점식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연안공간상의 보전과 개발간, 이용행위간의 상호경합과 상충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안역 관리기관도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수산부·내무부·해운항만청·수산청 등 10여개의 중앙부처와 청 단위의 관련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로 다원화되어 있어 연안역관리의 전담부서가 없어 개별사업단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의 개별법체계에서는 비록 부처간의 사전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하나, 각 부처들이 소관사항을 개별적으로 관장하여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가 곤란하며 결과적으로 행정절차상 협의과정의 복잡성과 상호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바다憲章'인 유엔해양법협약이 발

우리나라 연안역의 개발·이용·보전의 장기전망 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연안역관리를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98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공유수면 매립, 산업입지 및 도시계획, 해양관광지 개발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의 지침적 성격을 부여하고, 주요 연안역을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관리할 계획이다.

효(94. 11.)됨에 따라 신해양질서에서의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해양개발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쟁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외무역의 증가와 함께 연안역이 점차 복합산업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인공도시·산업플랜트·비축기지·고급어종 양식장·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안역은 매우 복잡한 자원환경이며 그 안에 부존하는 자원도 매우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으며 연안역에 부존하는 자원 또한 대부분 공공재적·공유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수단을 포함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표 2) 각 부처의 연안역 관련업무

	관 련 업 무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과 관리(국토계획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하천관리(수자원심의관), 수로측정(수로국)
해운항만청	해운·항만의 개발 및 관리
환경부	해양오염조사 및 규제
과학기술처	해양과학기술 개발
기상청	해양기상예보
내무부	연근해어업 허가, 자연공원 관리(각 시·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감시, 어업규제, 월선방지, 해난구조
농림수산부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
수산청	수산업 증진, 수산자원 개발
통상산업부	임해공단 관리, 조선공업, 해양광물자원개발, 대륙붕 유전개발
정보통신부	해저케이블 건설 및 관리
외무부	해양관련 조약체결
국방부	해군작전, 해로보호(해군)

沿岸域 통합관리체제 구축 등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에서는 국내 외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연안역 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연안역의 공간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안역에 부존한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도모하는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최근에 확정된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중요과제 중의 하나로 반영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연안역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정부기관간, 지역간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연안역 개발수요와 연안환경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가수준의 (가칭)「연안역관리법」을 97년말까지 제정하고, 98년말까지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연안역관리를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안역관리법」을 97년말까지 제정

먼저 이러한 연안역 통합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쏨연안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올해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연도에는 서해안의 실태조사와 국내외 연안역 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제2차연도에는 남·동해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안의 인문사회환경 및 자연환경과 연안이용행위, 연안부존자원, 연안환경오염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역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연안관리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분석한 후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안역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목적지향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연안관리의 기초가 되는 연안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관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단편적이고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조사방법 및 범위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연안역 실태조사의 결과는 향후 연안역 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다음으로 세계화 및 통일에 대비한 거시적인 국토개발 구도의 정립,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른 지역 및 국가계획의 조화,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수요의 증대 등에 대응하여 연안역 통합관리의 근거법률인 (가칭)「연안역관리법」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97년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연안역관리법」은 대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법과는 다른 특별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개발과 이용·보전의 우선순위 및 개발허용의 원칙, 국가 및 권역별 연안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및 부처간 업무조정절차, 연안역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해안재해 예방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육지부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제를 연안역에도 적용하여 개발조정해역·보전해역·준보전해역 등으로 구분·지정하고 개발과 보전입지를 사전예고한 후 이에 따른 행위규제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고자 한다.

연안역관리를 위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추진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연안역의 개발·이용·보전의 장기전망 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연안역관리를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98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공유수면 매립, 산업입지 및 도시계획, 해양관광지 개발 등 개발법에 의한 개발의 지침적 성격을 부여하고, 주요 연안역을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안역관리의 주요목표 및 추진전략, 연안역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안 권역별 이용 및 보전전략, 수산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어항, 항만, 항로, 간척·매립 등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각종 연안사업의 규모·투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및 해난·재해의 방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연안역 이용의 급증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이용과 난개발의 억제, 이용활동간 상충에 대한 조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남원**

**의식개혁 따로 없다
내가 먼저 바른척신**

우

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1962년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의 가동을 계기로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78년 원자력발전소의 상업가동을 통해 처음으로 전기를 얻기 시작한 이래, 현재 연구용 원자로 4기와 11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7기의 원전이 건설 또는 계획중에 있다.

힘과 기술을 원전개발을 추진하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과 공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연구용 원자로 부문에 있어서는 95년 4월 30MW급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HANARO)'가 우리 기술진에 의해 설계·건조되어 의료 및 산업용 동위원소의 생산과 이용에 활용되고 있으며, 소재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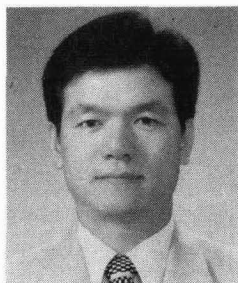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방향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을 이용하여 5천억kWh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등 이제 세계 10위권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국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원자력발전국으로 성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이요, 원자력 선진국과 긴밀한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원자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원전건설·운영경험을 바탕으로 84년 원전표준화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원자력 발전기술의 자립도가 95% 수준에 이르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표준형 원전을 완성하게 되었다. 한국표준형 원전은 미국의 '시스템-80' 노형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우리의 실정에 적합토록 100여종 이상을 개선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켰으며, 운전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전의 이용률과 가동률도 크게 향상시켰다.

앞으로 이러한 표준원전 개발경험을 토대로 열병합이나 담수화 목적의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나가고, 한국표준형 원전의 개발과정에서 얻은 우리의 독창적인 경



김영식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는 '하나로' 연구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아시아 국가와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시설의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꾸준히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원자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을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함께 호흡하는 원자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 전력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2006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의 부족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원전의 지속건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의학적·농학적·공학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영역도 더욱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原子力 發電은 에너지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

국제적으로는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지구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를 원자력의 새로운 부흥기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빈국의 전략적인 에너지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21세기 중반에는 매년 약 1조GJ(Giga Joule)의 에너지가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에서는 2010년까지 증가되어가는 에너지량의 55%를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여 향후 15년 후에는 아시아에서의 에너지소비가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충당해 나가게 되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감축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지난 95년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원자력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아주 적고, 이산화탄소 방출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전력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95년말 현재 세계적으로는 32개국에서 439기의 원전이 운영중에 있고 51기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은 경제발전과 따른 에너지 소비의 증가 특히, 전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시설용량이 현재의 약 1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원전건설은 꾸준히 추진되어 갈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원전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도모해 나가려는 국가의지가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기술의 공동활용과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측면 등에서 아시아 지역내의 원자력협력은 의미가 크고 또 지역내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원자력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활용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차세대원자로나 장차 에너지원의 고갈에 대비하고 핵확산 위험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원자력은 농수산물의 살균·저장을 비롯하여 핵의학, 생명공학, 신소재 개발, 수소분해 등으로 그 응용 분야가 다양화되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원자력환경 변화와 전망에 기본을 두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96년 정부예산에 신형원자로 개발과 원자력 이용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94년말 현재 총발전량의 75%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또 총발전량의 12%를 수출하는 등 원자력이 국가에너지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개발·이용 장기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초까지 고속증식로 實證爐(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입증하는 원자로) 준공과 재처리시설 완성 등 핵주기정책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그동안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원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국까지도 21세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여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산 1호기와 광둥 1·2호기의 상업운전에 이어 진산 2·3호기의 건설 및 광둥 3·4·5·6호기의 건설계획 등 의욕에 찬 원자력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중국·인도·파키스탄과 대만 등이 운영중인 원전은 95년말 현

재 총 79기이며, 건설중인 원전 18기와 계획중인 원전 33기를 합하면 미국에서 가동중인 109기의 원전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

21세기초에는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도 원전을 가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아시아 지역은 원전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發展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아시아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원전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도모해 나가려는 국가의지가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의 공동활용과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측면 등에서 아시아 지역내의 원자력협력은 의미가 크고 또 지역내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는 90년 5월 원자력협력 각서를 교환한 이래 정례적인 원자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관심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일 원자력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안전 조기연락망 설치·운영',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심사 기술협력',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사선 환경생태 해석' 등 원자력안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연구' 등을 협의·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는 일본의 과학기술청 및 통상산업성과 규제정보교환 약정을 체결하여 매년 원자력안전 정보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현황과 원자력발전

〈표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현황

		용량 (만kW)	원자로형	공급자		착 공	상업운전
				원자로	터빈발전기		
고 리	1호기	58.7	가압경수형 (PWR)	웨스팅 하우스 (미국)	G.E.C. (영국)	70. 9	78. 4. 29
	2호기	65	"	"	"	77. 5	83. 7. 25
	3호기	95	"	"	"	78. 1	85. 9. 30
	4호기	"	"	"	"	78. 1	86. 4. 29
월 성	1호기	67. 9	가압중수형 (PWR)	AECL (캐나다)	Parsons (캐나다·영국)	76. 5	83. 4. 22
	2호기	70	"	"	한중(주) (GE·美)	91. 7	(97. 6 예정)
	3호기	71. 3	"	"	"	91. 11	(98. 6 예정)
	4호기	"	"	"	"	"	(99. 6 예정)
영 광	1호기	95	가압경수형 (PWR)	웨스팅 하우스 (미국)	웨스팅 하우스 (미국)	80. 3	86. 8. 25
	2호기	"	"	"	"	"	87. 6. 10
	3호기	100	"	한중(주)·원연 (CE·美)	한중(주) (GE·美)	89. 6	95. 3. 31
	4호기	"	"	"	"	"	96. 1. 1
	5호기	"	"	"	"	95. 12	(2001. 6 예정)
	6호기	"	"	"	"	"	(2002. 6 예정)
울 진	1호기	95	"	프라마툼 (프랑스)	알스툼 (프랑스)	81. 1	88. 9. 10
	2호기	"	"	"	"	"	89. 9. 30
	3호기	100	"	한중(주)·원연 (ABB-CE·美)	한중(주) (GE·美)	92. 5	(98. 6 예정)
	4호기	"	"	"	"	"	(99. 6 예정)

소의 운전경험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기관간에 기술협력약정 등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며 세계 30번째로 원전을 보유한 중국과는 94년 10월 이봉 중국총리의 방한기간중에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12월에는 한·중 원자력안전협력 의정서가 교환된 바 있다.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는 94년 11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시 원자력협력협정을 가서명하거나 의향서를 교환하여 아시아 지역과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베트남과는 민간 차원에서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의료용 방사선 조사시설의 공동건조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원전 타당성 조사에 기술자문을 해주는 등 협력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내의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95년 4월과 5월에 원전운전 및 안전문제에 관한 워크숍과 원자력발전 사업관리에 관한 국제 훈련과정을 각각 개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국가간 원자력협력사업인 지역협력협정(RCA) 사업을 통하여 6월과 10월에 원전기획사업 추진전략에 관한 지역간 워크숍과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훈련과정을 각각 개최하기도 했다.

국제 공동의 노력으로 원자력 이용도와 안전도 높여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원자력계가 국가간의 단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국제



협력은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게임(Positive Sum Game)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기술과 상대의 기술이 서로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와 상호간에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협력은 크게 원자력이용과 원자력안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원자력의 이용관점에서 보면 기술교류나 공동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술교류는 학술대회 개최, 전문가 상호교환, 학술자료 교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공동연구는 차세대원자로 개발이나 방사선과학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기술의 협력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간에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기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서로 유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는 운전정보의 상호교환, 안전기술협력, 방재훈련의 상호참관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지역협력 채널의 구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미래계획들은 확고

한 원자력안전의 기초 위에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원자력 안전성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자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으로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94년 9월 원자력안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을 제정·발표하고, 안전 문화 정착이 원자력 안전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를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95년을 원자력안전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특히 원자력안전정책 성명이 발표된 9월 10일을 '원자력 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시설의 안전문제는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국제 원자력환경은 크게 변화되어 갈 것이므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표준형 원전개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원전개발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원자력연수원을 국제 수준의 원자력훈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하나로'연구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와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에 대한 연구협력을

우리는 한국표준형 원전개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와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에 대한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꾸준히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강화해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꾸준히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금년 5월 제5차 아시아 지역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심포지엄(ASRR-V)을 대전에서 개최하여 이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다시는 이땅에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원자력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자력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원자력 안전협력을 국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원자력안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아시아지역의 원자력안전정보 등이 상호교환될 수 있도록 '아시아지역 원자력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며, 그동안 방사선방호 차원에서 RCA 주관하에 추진해 오고 있는 방사선 비상시 상호지원 프로그램도 좋은 결실을 맺어 가도록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지역내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사성폐기물 지역처분장'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원자력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남북을 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APEC 각료회의 등과 연계하여 토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아시아지역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95년말 현재)

(단위 : 만kW)

	운전 중		건설 중		계획 중		합 계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일 본	4,053.1	49	499.7	5	165	2	4,717.8	56
한 국	961.6	11	410	5	200	2	1,571.6	18
대 만	514.4	6	-	-	260	2	774.4	8
중 국	220.6	3	120	2	1,540	16	1,880.6	21
인 도	162	9	110.0	5	188	6	460	20
파키스탄	13.7	1	32.5	1	-	-	46.2	2
인도네시아	-	-	-	-	180	2	180	2
태 국	-	-	-	-	100	1	100	1
베트남	-	-	-	-	미정	2	미정	2
합 계	5,925.4	79	1,172.2	18	2,633	33	9,730.6	130

공무원과 기자

조호연

경향신문 기자/환경부

공

무원과 기자. 취재를 하면서 자주 되새겨보는 문제다. 우리나라 어느 법전에도 이들의 관계를 규정지은 조항은 없다. 동료기자들도 이에 대한 명백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점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저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때문인지 공무원과 만나면서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은 밀어붙여라” 10여년 전 기자 초년병 시절 선배들에게 들었던 말이다. 공무원은 비밀에 붙이도록 된 업무가 아닌데도 업무내용을 잘 숨기므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편이 기사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이었다. 당시에는 일정하게 공무원 사회에 이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지 보편적인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자들은 상대할수록 손해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의 업무가 기사화되면 상부에 보고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기사가 업무의 결점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내용이라면 상관의 질책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된 현실적인 배경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역시 보편적인 명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공무원과 기자가 만나는 이유는 정부정책의 국민홍보 차원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둘의 관계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한쪽이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부와 국민이 유리되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서로 숨기고 경원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 내심 불만이다. 공무원들을 만나면 필요 이상으로 공손하면서도 정작 얻고자 하는 대목에 가면 뚜렷한 명분도 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상관에게 보고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난감해진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기자들에

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게 말해주는 어느 공무원은 “기자들은 무례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무 사무실이나 불쑥불쑥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고 아무한테나 반말을 하고 모든 일에서 자기 위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요구사항에 대해 조금만 늦어도 마치 상관이나 되는 것처럼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대서특필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와 공무원의 이 같은 상반된 견해는 극히 일부에 대한 일부의 의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다수 공무원과 기자들은 서로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묵묵히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이 같은 공무원과 기자들의 숨은 노력이 아주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민**

지방화시대의 사고방식

김상철

한국경제신문 기자/건설교통부

지

난해 선진국 항만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체선·체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을 때다. 선진 항만시설을 직접 보고 국내에 소개한다는 것이 당초 출장의 목적이었지만 기자가 정작 배우고 감명을 받은 것은 항만을 운영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마인드와 해당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작은 감명은 첫 방문지인 미국 LA항에서부터 시작됐다. 마중나온 LA항만청 관계자들의 태도는 단순히 멀리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대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곳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LA항의 성쇠에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면서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은 물론 외국선사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LA항에 기항하는 우리나라의 H해운을 담당하고 있다는 한 공무원은 H해운이 인근의 다른 항만으로 기항지를 변경할 경우 자신은 면직된다고까지 말했다. 따라서 이 공무원은 H해운이 LA항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최대 임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해운회사 위에서 군림하는 우

리나라 항만 관계자들의 태도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서는 항만이 지방경제의 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로테르담항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지역 총생산의 3분의 1 가량을 로테르담항이 차지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로테르담 지방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세계 최대의 항만을 건설한다는 장기계획 아래 항만시설 확충 및 진입도로, 야적장 건설사업에 끊임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 로테르담 지방정부는 항만시설 외에 해운선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과 연결되는 화물전용도로까지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고 있었다. 로테르담항 관계자는 ‘우리 지방이 번영하는 길은 로테르담항을 유럽 최대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방문지인 독일의 함부르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점이었다. 함부르크 주정부의 항만시설 확충계획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추진되고 있었다. 항만 진입도

로 건설 반대는 물론 항만 확장공사 예정지를 주택단지로 전환하자고 시위까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최근 정부의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든 달갑지 않은 남비현상 때문이다.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전소는 물론 댐 건설이 남비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항만도 기피시설이 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이 4단계 확장사업을 반대하기도 했다.

항만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은 간과한 채 오히려 화물차량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컨테이너稅까지 징수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화물을 유치하려는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기여도를 먼저 고려하여 지방 특성에 맞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김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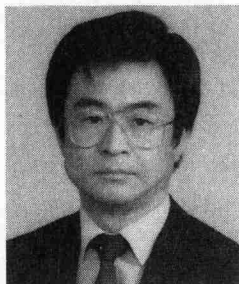
얼 마전 30대그룹 기초 실장을 초청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금년도 임금정책을 설명하는 조찬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30대그룹이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비용의 90%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향상시키는 데 솔선해 달라고 주문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구조적이고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문제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1.37로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복지수준도 중소기업이 따라잡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산업재해자도 7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작업환경 또한 매우 나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는 일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난을 꼽고 있다. 요컨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경제의 이중구조현상이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기업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는 이러한 이중구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S그룹의 협력회사에 대한 인력개발 지원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룹은 협력회사에 대해 기술지원과 현금결제, 환경안전진단 무료실시 등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5년 전부터 협력회사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중소기업과 손잡고 뛰는 대기업



김원배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어 이를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자사 브랜드의 질적 경쟁력 약화를 부를 것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회사에 대해 인력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운영으로 대기업과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부품 공정불량률이 50% 이상 개선되었고 제안건수도 연간 1만건 이상 달성하고 있으며 협력회사의 국제인증획득도 연간 1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부품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그룹은 금년부터

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운영비 부담비율이 종전 50%에서 20%로 경감되었고, 협력회사로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총액은 56억원인 데 비해 이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환급받는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납부액의 180%를 되돌려받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 그룹은 협력업체 전용연수원을 확대하고 공동직업훈련원과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첨단연수원으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회사는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한가죽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험난한 국제경쟁력의 파고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은 현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부정책과 이에 호응하는 기업의 적극적 자세가 일궈낸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제 건강한 중소기업 근로자 없이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수직분업을 통해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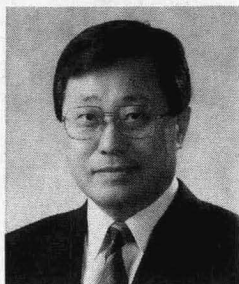
최 근 미국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주도의 국가가 국방 부문을 제외한 과학기술예산을 크게 삭감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경제 후발국들과의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단기처방의 하나로 보여지나, 그동안 미국이 인류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쏟아온 투자와 노력의 여러 결실들을 상기할 때 아쉬움을 갖게 한다.

그중의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이 비전으로 제시한 뉴프런티어로서의 우주개발 성과를 들 수 있다. 인류의 달 착륙, 태양계 무인위성 탐사 등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소재 및 기기 개발은 물론 위성을 활용한 통신혁명·기상예보·자원탐사 등 인류에 혜택을 가져다 준 사례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하나의 비전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1세기 초반에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부응하여 인류에의 공헌을 위한 비전을 갖고 이를 추진할 시대이기도 하다. 그중에서 우리 국민의 우수한 두뇌, 불굴의 끈기, 홍익인간의 자질 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단연 과학기술 분야가 손꼽힌다. 특히 지구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해양·우주, 정보통신, 신소재 분야 등에서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비전을 지닌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의 국가와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중요한 주체로서는 교수·연구원 등 과학기술인,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경영진 그리고 정책입안·시행기관인 정부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사업을 연극에 대비하면, 이들은 각각 배우·연출가·제작자에 비교된다.

비전과 조화 속의 과학기술



장문호

과학기술처 화공생물연구조정관

성공적인 연극을 위하여서는 평소 최고를 꿈꾸며 부단히 노력하는 배우들, 훌륭한 작품의 선정·해석은 물론 개성이 강한 배우들의 다양한 능력을 결집하여 최선의 연극을 만들어 내는 연출가 그리고 연출가와 함께 작품을 구상하며 가능한 최상의 지원을 통하여 흥행은 물론 작품성의 성공을 도모하는 제작자들의 비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전이란 그 소유 주체들인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체 그리고 국가의 직접적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개인·조직 그리

고 국가들이 그 비전의 차이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비전을 가진 이들 주체의 실현의지가 중요하며, 한편 주체 사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일부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주체간 조화의 상대적 결여로 상호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때마다 뜻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나 우려된다. 각 주체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일부 정책시행상 오류도 거론되나, 과학기술인들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특성이질인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남의 의견을 좀처럼 용납치 않으며, 남보다 무조건 우위에 서려는 개인 내지 집단의 고집스러움이 돋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주체와의 조화가 결여된 비전은 참다운 비전이라 할 수 없고, 결국 모두의 파국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의한 과학기술의 선진화·세계화의 목표도 올바른 비전을 가진 주체들의 조화 속에서 그 성취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
은 이후 하도급거래, 대기업
의 내부거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경쟁업
무에 몰두하다 보니 모든 일
이나 사물을 '경쟁'의 관점에
서 보게 된다.

밤늦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공부방법을 보면서, 약속장소
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생
각하면서, 심지어는 점심을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면서도 가장 최선의 방
법·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
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행위
를 '경쟁'이라고 표현한다.
경쟁이란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이며 나아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때
문이다.

경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타인과의 거래를 전제로 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경쟁행위'가 있다. 이는 우리 공정거래 행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쟁의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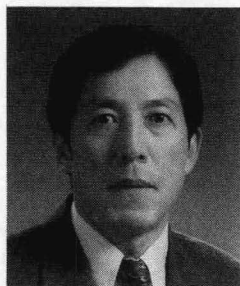
둘째, 타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개인 자신의 경쟁행
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
는 의사결정행위를 개인의 경쟁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간의 경쟁에 있어서는 경쟁의
기본원리인 공정성과 결과의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행
위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일상적인 경쟁행위에 있어
서는 경쟁원리를 고려함이 없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경
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시간경쟁(합리적인 배분·사
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부가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시행을 검
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간경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름·겨울을 가리지 않고 무

시간과의 경쟁



이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공보관

의식적으로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 생활을 맞춘다. 겨울
동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바쁘게 생활하던 사람도 해
가 일찍 뜨는 여름이 되어도
출근 전에 여유시간이 많으
니 늦잠을 자거나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등산의
경우에도 일출에 맞추어 산
에 오르키보다는 자명종 시
보에 맞추어 산에 오른다.

대부분의 사람이 겨울에
비하여 여름에 일어나는 시
각을 앞당기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신
체의 리듬이나 자연의 변화
에 순응하여 살기보다는 인
위적인 제도 또는 관습에 의
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직장인은 자기생활의
상당부분에서 자신과의 시간경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밤·낮 또는 아침·저녁의 단위시간이 동일한 가치
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나누어지거나 합쳐지더라도
단위시간당 효율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 아닌가 한다.

공업화 이전 농경사회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해 뜨는
시각에 맞추어 일어나 일했다. 여름에는 일하기 좋은
아침·저녁에 보다 열심히 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뜨거운 한낮에는 더위를 피해 휴식을 함으로써 이미
시간경쟁을 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일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출근제나
토요일휴무제 등도 서머타임제와 같은 시간경쟁의 하나
라고 생각된다. 원래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동서
의 중간지점)이나 국제적인 편의상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경이 위치한 정오를 기준하게 되어 해가 30분만큼
서쪽으로 기울었을 때가 정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
머타임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의
독립적인 시간대를 갖는 의미가 있다.

시간의 가치는 시간대별로 각기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의 경우 아침시간은 저녁시간보다 일의 생산성이 높다. 반면에 저녁시간은 아침시간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훨씬 높다.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저녁에 이루어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대별 용도·가치를 감안해보면 서머타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하다. 여름에 1시간 근무시간을 앞당김으로써 무덥지 않은 오전시간에 집중적으로 근로시간을 배정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개인은 출근 전에 무료하게 소모할 수 있는 1시간을 저녁 여가이용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1시간 조기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 전의 자투리 시간을 오후의 여유시간에 합쳐 외국어 연수·체력단련·문화활동 등에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등의 무계획적인 과거의 생활이 건전한 여가·문화생활로 전환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해가 있을 때 활동함으로써 저녁에 불을 켜고 작업하는 시간을 줄여 에너지 절감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에너지 절약효과가 1%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서머타임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제도는 여건이 맞아야 제대로 시행·정착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경제여건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만 생긴다. 서머타임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서머타임제 시행을 논의했을 때 근무시간만 앞당겨지고 퇴근시간은 사실상 변함



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결과만 부른다고 반대하였다. 5~6년 전만 해도 충분히 일리 있는 반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토요일무제가 확대되고 있고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시간외 근무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노동력착취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일수준의 위도에 위치한 나라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머타임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하 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복잡·다양한 세상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통계만큼 위력적이고 간편한 수단도 없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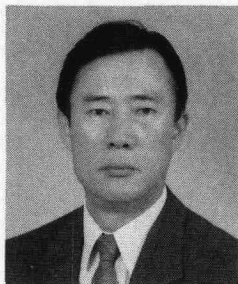
우리는 매일 신문·방송 등의 매스컴은 물론이고 사무실의 업무과정에서 접하는 통계 즉, 數値화된 자료를 통해서 변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물가동향을 보고 작게는 식탁에 올릴 먹거리로부터 크게는 자동차와 주택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구매결정을 내린다.

통계청 통계연수원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통계연수과정을 개설하였다. 선생님들을 통해 통계에 대한 이해와 이용방법을 초등학교 학생부터 습득시켜 합리적인 생활습관을 배양하자는 취지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자원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100명에게 통계의 기초 지식, PC를 이용한 통계작성방법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통계교육방법을 소개하는 이틀간의 일정이었다.

수십년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라 처음에는 여간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았으나, 한가지라도 더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틀간의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연수기간이 너무 짧다”, “PC를 이용한 실습이 더 보강되었으면 한다”, “보다 상급과정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리 직원들이 무척 고무되었다. 이번 여름방학 연수부터는 기간도 더 늘리고 교과내용도 훨씬 심화시켜 실시해 볼 계획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양하고 개인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의 으뜸이 합理性이 아닐까 한다. 근대 이래의 정치(자유민주주의)·경제(자본주의시장경제)·사회(시

통계와 합리성



송태준

통계청 통계연수원장

민사회) 구조의 근간은 뭐니 뭐니 해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였고, 향후 인류의 발전도 이 합리성이 어떻게 구현되어 나갈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主情性 또는 情緒性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다. 정서적 성향은 우리의 槓槓의 역사과정에서 삶의 어려움을 恨으로 삭이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끈끈히 이어줌으로써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 발전시켜온 고마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 선진국群에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점에서 이러한 정서성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서성의 가장 큰 역기능은 제반 의사결정과 판단을 감정적으로 이끄는 데 있다.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소위 ‘민주화’가 괄목할 만큼 진전되어 가고, 경제도 3차산업 중심의 성숙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성은 답답할 정도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성에 매력을 느끼고 卽發的이고 감성적인 행동양식을 지양하여 개인과 집단들이 보다 차분한 자기성찰적인 자세에서 일상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 줬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개인들마다의 꾸준한 노력과 습관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어릴 적부터의 사고와 행동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기성세대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객관적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에 이번의 통계연수과정이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길 기대해 본다. 남성

러시아 경제개혁의 明暗

김예기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주임전문원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도 수년이 흘렀다.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들 국가들은 운영 미숙, 적응능력 결여, 보수세력의 반발 등으로 좌절과 시행착오를 경험해 오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겠다. 92년 1월 2일 대규모의 가격자유화 조치를 시발로 전개된 경제개혁은, 가격자유화를 통하여 과잉통화를 흡수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초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한다는 경제전반에 걸친 급진적인 개혁조치였다.

개혁 초기에는 경제자유화와 재정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생산 감소, 고인플레이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경제개혁의 구체화 방안을 승인하기도 전에 개혁의 노선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금융정책 완화,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 해제, 단일변동환율제도 도입, 대규모의 사유화 등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속도가 크게 둔화되자 초기의 개혁주도세력은 대부분 퇴진하게 되었고 舊소련의 핵심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초기에는 대출 확대, 임금 인상 등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기도 하였으나 세수 증대, 세출 감소, 국채 발행, 외환 시장 개입 중단, 화폐 개혁 등을 통한 인플레이 억제와 경제 안정화시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최고회의가 재정적자가 GDP의 20%를 넘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사유화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러시아는 한때 정치적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92년초부터 시작된 엘친의 경제개혁은 정치·경제적 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해 오고 있다. 또 다수의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등 계층별·지역별에 따라 그 영향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등 개혁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엘친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새로운 경제모습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이 좌초되어 경제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호조 추세를 바탕으로 경제개혁 성과 가시화

먼저, 경제개혁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가는 95년 하반기부터 안정 되찾아

92년 1월 엘친의 가격자유화조치 이후 동년 12월의 소비자물가가 26배나 상승하는 등 94년 12월에 최고조에 달했으나(91년 12월에 비해 795배나 증가하였음) 이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하여 95년 하반기부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 이후 계속 하락해 왔던 공업생산은 95년 5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공업생산의 호조에 힘입어 91년부터 두 자리수의 하락을 기록해 왔던 GDP의 성장률도 95년에는 한 자리수의 하락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주의 무역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그동안 큰 폭으로 격감되어 오던 대외교역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공업국과의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95년 러시아의 대일무역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30%나 증가한 6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개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막대한 해외차입금, 외화부족 등에 시달리는 러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도 꾸준히 증가

경제규모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하지만 외국인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95년 9월부터 에너지·통신 등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제2단계 민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기생산업체 등 대규모의 방위산업체를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정부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한 재정적자폭의 축소 등 긴축 재정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기조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투자가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으며 투기 분야로 유출됐던 민간자금이 산업계로 유입되는 등 투자의 내용이 건실

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호전 추세를 바탕으로 IMF·OECD 등 국제기관들도 러시아의 경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 경제는 금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OECD는 96년에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2%, 인플레이션은 60%(월평균 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정치·경제적 혼란 등
비관적인 요인도 상존

그러나 이와 같이 러시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비관적인 요인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재정긴축으로 인한 임금저하나

복지혜택 축소가 국민의 불만 야기

우선, 재정긴축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러시아 국민들의 실질임금 저하, 사회복지혜택 축소 등을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불평·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민층과 실업자의 증가,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은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96년 6월로 예정된大選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도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확대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경제안정기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세계경제는 유럽의 EC, 북미의 NAFTA,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PEC 등의 경제블록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 어느 경제블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주변의 고속성장국의 자원공급 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경제개혁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유화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유화는 이념적으로 충돌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 이해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논란은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유화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는 외면한 채 물량 위주, 목표지향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 특혜시비 등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경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해 있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화된 하였으나 사유화의 중지,
구체제로의 복귀 등 공산·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94년	95년	96년	97년
실질 GDP 성장률(%)	-15	-4	2	4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말기준)	226	140	60	60
실업률(%)	6	8	9	10
재정적자(GDP 대비, %)	-10.1	-4.0	-4.0	-3.5
경상수지(10억달러)	0.5	0.0	3.0	0.1

이와 같은 비난은 일부 개혁세력들 사이에서도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ILO방식에 의하면 93년말 5.5%, 94년말 6.5%, 95년 6월에는 7.7%로 아직까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실업자로 등록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군수산업체·섬유업체 등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 및 우랄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혁파의 지지기반 약화가

경제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

러시아내의 외국인 합작기업들은 총선을 전후하여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증가시켜 왔다. 특히 95년 후반기에는 과실송금액이 러시아내의 재투자금액의 5배나 되기도 하였다. 또한 총선에서 공산당이 급부상하자 서방의 對러시아 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외국인투자법·자유경제지대 등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고 과다한 세 부담도 투자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시작된 지방분권화는 국가의 공동이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권한과 특권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이 없는 지방정부관료,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갈등도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부존자원에 대한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을 뿐 자원배분 등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외면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정적인 권한만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서방정부는 96년초에 엘친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부총리에 경제전문가가 아닌 자동차회사 사장을 임명한 것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보다는 정치적 편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개혁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보수파세력이 제1당으로 부상함에 따라(95년 12월 17일에 시행된 러시아 총선결과에 의하면, 전체 450개의석 중 공산당·농민당을 비롯한 공산·민족파가 246석, 러시아 여성, 우리집 러시아 등 중도파가 66석, 야블로코·러시아민주 등 개혁파가 61석, 무소속이 77석을 차지하였음) 엘친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엘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해 있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약화된 하였으나 사유화의 중지, 구체제로의 복귀 등 공산·보수세력들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또다른 급변은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더 큰 혼란과 고통만 야기시킨다는 사실과 서방 선진제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개혁·보수파 공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친정부는 경제개혁을 일부 수정하거나 완급을 기할 지언정 6월의 대선전까지는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개혁의 속도는 대선결과에 좌우될 것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상식

• 니치마켓팅(Niche Marketing)

니치마켓팅(Niche Marketing)이란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규모 집단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특성의 성격을 지닌 소비자들의 수요와 개성에 따라 판매 목표를 설정, 소비자를 공략하는 마케팅전략을 말한다. 즉, 남이 아직 모르고 있는 좋은 곳, 빈틈을 찾아 마케팅전략을 구사한다는 세분화된 시장 및 소비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틈새시장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또한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미시족, 독신자, 미혼커플, 신노인계층,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생활형태가 나타나면서 소비계층도 세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분화되고 있는 소비자군을 공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니치마켓팅이다.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완화

심경우/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새정부 출범 이후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규제완화시책은 올해로 추진 4년째를 맞이하면서 정치·경제·교육 등 사회 제분야에 상존하는 경쟁규제적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만7,43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1만3,629건의 과제를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들고 있다.

규제완화가 시장원리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별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제부문에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해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라 볼 때, 앞으로 세계화 달성의 실천적 내용을 담아내는 수단으로서의 규제완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각종 설문조사에 응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성적 평가를 통해 향후 실제적인 규제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이 더욱 요청되는 시기라 하겠다.

총 166건의 과제 중 143건을 개선완료하고 23건은 추진중

지금까지 추진한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완화 과제는 총 166건으로 이 중 143건이 개선완료되고 23건은 추진중에 있다. 노동행정 부문의 규제는 타부문과 달리 경제적 규제의 성격과 사회보호적 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무조건적인 완화만이 최선일 수 없다. 따라서 노동행정 부문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은 경제적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분야별로는 고용·훈련 등 고용정책 분야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 분야가 56건, 산재보험 분야 18건, 근로기준 분야 14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고용보험제의 실시와

더불어 그간 직업훈련의무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인력양성체계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훈련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였다.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장을 1천인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7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기업자율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순기능공 양성체계를 다기능기술자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대학체제로 개편하여 12개의 기능대학을 설립하였다.

전국적 고용보험전산망을 구축하여 고용보험운영의 원활화를 지원함은 물론 취업전산망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취업알선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참예한 이해대립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전자·섬유 등 일부 비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4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사업장을 종래의 1천인 이상에서 5천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고, 3인 이상은 500인 이상에서 3천인 이상으로, 2인 이상은 300인 이상에서 1천인 이상으로 각각 축소 조정하였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기준을 완화하여 1인 이상 선임기준을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2인 선임기준을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였으며,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기준도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완화는 그간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부문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재예방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노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분규·무재해 등 노무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였다. 따라서 전년도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무재해 목표 3배 이상 달성사업장이나 기능장려우수업체, 장애인고용모범업체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당사업장이 대형 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수시감독 등을 통해 관

리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일반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산재보험 요양비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의지보조기 및 치과 보철료 등의 수가를 현실화하였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 요통, 소음성난청 등 7종에 대한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노력과 보험료 부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업·상수도업 등에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 도입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노력을 유도하였다.

지속성 담보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 시행 필요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규제완화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주된 것은 인허가 등 핵심적인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 전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적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철저히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민간의 광범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민간 연구기관의 축적된 연구결과물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의 수준과 방법이 규제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

는 국민복지구상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는 단계에서 보건복지·환경·노동 부문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필요시는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규제의 수준을 직접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를 전환해 나가는 등 방법을 세련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추진기구의 일원화도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 실제로 행정쇄신위원회·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총무처 등 많은 기구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중복과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산·인력 등의 측면에서도 낭비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은 각종 설문조사결과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선에서 개선된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규제완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하겠지만, 권한과 책임의 하부양이 부족하고 적발 위주의 감사가 실시되는 엄연한 현실에서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보다 새로운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설규제의 사전심사·규제일몰제·규제실명제 등도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내는 등 지속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갖가지 후속조치가 적절히 취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광공업활동의 현황 및 구조변화

한성찬

통계청 산업통계1과장

광업과 제조업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7%)이 높을 뿐 아니라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정책입안을 위하여는 동 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추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생산활동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급여·출하·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 17개 항목에 걸쳐 동 산업을 영위하는 중

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공장·탄광 등)를 대상으로 매년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광공업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활동유형을 산업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제6차 개정분)뿐 아니라 이보다 세분된 약 3천개 품목까지 상세하게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이 부문의 가장 방대한 조사이다. 게다가 1955년 최초조사 이래 40여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해냄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 국제기구 등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광공업활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광업의 생산활동은 부존자원 부족, 채산성 악화 및 수요 감소 등이 겹쳐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생산활동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자동차·철강·조선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호조로 최근 수년간 연평균 15% 정도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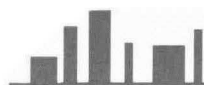
94년 한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중에 실시한 '94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의 결과는 특히, 설비자동화 및 다원화된 생산체계의 확산 등에 의한 대규모 사업체 감소 및 사업체의 소규모화 경향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세 지속 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94년 기준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체수·종사자수·급여액·출하액·부가가치·유형고정자산 등 주요지표에 대해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

〈표 1〉 광공업활동 개황

(단위:개, 천명, 10억원, %)

	93년		94년		증감률	
	광공업	제조업	광공업	제조업	광공업	제조업
사업체수	90,506	88,864	92,578	91,370	2.3	2.8
종사자수	2,931	2,885	2,962	2,926	1.0	1.4
급여액	29,309	28,834	33,116	32,706	13.0	13.4
출하액	256,226	254,399	296,709	295,031	15.8	16.0
부가가치	109,715	108,522	129,987	128,779	18.5	18.7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	129,854	128,126	145,502	143,836	12.0	12.3
(연간투자액)	29,075	28,738	31,869	31,634	9.6	10.1



업 부문에 대한 현황 및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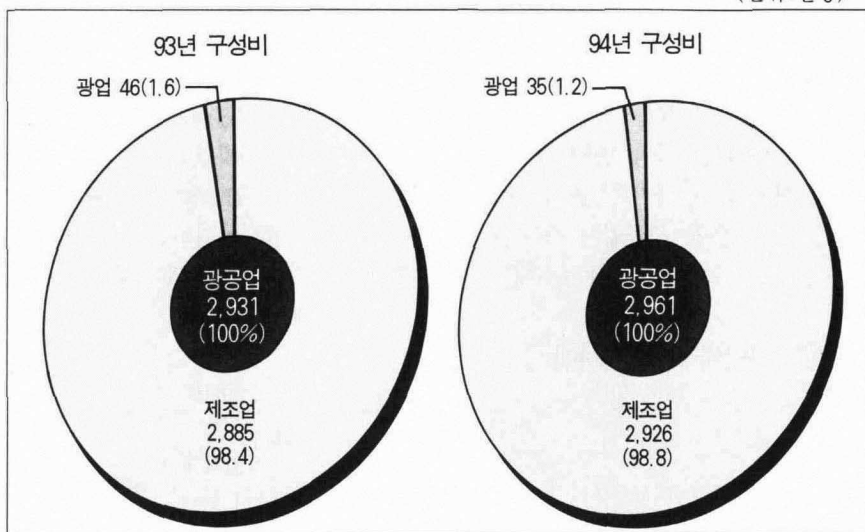
광공업 사업체수 전년 대비 2.3% 증가

94년말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는 9만2,578개로서 전년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이 같은 사업체수 증가는 지난 83~88년간의 연평균 8.5% 및 88~93년간의 연평균 8.0%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이며, 이는 중화학공업 관련 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소금생산업(천일염) 등의 사양화가 계속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의복·신발제조업 등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사업체수를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5~19인 사업체를 중심으로한 소규모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5~19인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체수의 비중(구성비)은 늘었지만 종사자 20인 이상 중·

〈그림 1〉 산업별 종사자수

(단위:천명)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체규모가 소규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이러한 대규모 사업체수의 감소 및 사업체규모의 소규모화 현상은 자동화 생산설비의 확충, 협력사업체 또는 위탁사업체를 통한 생산체계의 확산 및 소사장제에 의한 생산라인의 독립운영 등으로 종사자규모가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업체수를 조직형태별로 보

면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소폭 늘고 직종별 임금격차는 크게 축소돼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업체의 94년중 월평균 종사자수는 296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였다.

광업은 사업체수의 감소와 더불어 종사자수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섬유·의복·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 등 중화학공업의 높은 증가에 힘입어 다소 증가하였다.

종사자수를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수는 78만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나, 생산직 종사자수는 211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친 것으로

〈표 2〉 사업체규모별 사업체수

(단위:개, %)

	93년	구성비	94년	구성비	증감률
5~19인	62,597	69.2	64,385	69.5	2.9
20~49인	18,460	20.4	18,645	20.1	1.0
50~99인	5,501	6.1	5,579	6.0	1.4
100~299인	2,986	3.3	3,040	3.3	1.8
300인 이상	962	1.1	929	1.0	-3.4
합 계	90,506	100.0	92,578	100.0	2.3



나타났다. 이같이 생산직 종사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생산직 여자종사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 등 중화학공업의 종사자수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하였으나, 섬유·의복·신발 등 경공업의 종사자수는 3.2%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다.

또한 직종별 임금격차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한해 동안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 사업체에서 피용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33조1,16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 증가하였고, 피용자 1인당 급여액은 1,15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는 11.8% 증가하였다. 이를 직종별로 보면 생산직과 사무직

의 임금격차는 116.1%로 전년의 123.9%에 비해 7.8% 포인트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용자 1인당 급여액을 산업중분류별로 보면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946만5천원), 기타 운송장비제조업(1,822만3천원), 담배제조업(1,735만9천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554만7천원) 등이 높았으며,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837만9천원),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880만4천원)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용자 1인당 급여액의 증가율은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6.8%), 제1차 금속산업(13.7%) 등은 높았으나 담배제조업(3.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5.5%)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업체규모별 출하액

(단위:10억원, 개, %)

	출하액					사업체수	
	93년	비중	94년	비중	증가율	비중	
5~299인	122,650	47.9	143,311	48.3	16.8	91,649	99.0
300인 이상	133,576	52.1	153,398	51.7	14.8	929	1.0
합 계	256,226	100.0	296,709	100.0	15.8	92,578	100.0

〈표 4〉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 추이

(단위:개, 천명, 10억원, %)

	93년		94년		증감률	
	중화학공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사업체수	44,144 (49.7)	44,720 (50.3)	45,831 (50.2)	45,539 (49.8)	3.8	1.8
종사자수	1,650 (57.2)	1,235 (42.8)	1,730 (59.1)	1,196 (40.9)	4.8	-3.2
출하액	176,918 (69.5)	77,481 (30.5)	210,685 (71.4)	84,346 (28.6)	19.1	8.9

註: *괄호 안은 구성비임.

〈표 5〉 부가가치 및 관련지표

(단위:10억원, 천원, %)

	93년	94년	증감률
생산액	257,776	299,879	16.3
주요생산비	148,061	169,893	11.4
부가가치 ¹⁾	109,715	129,987	18.5
부가가치율 ²⁾	42.6	43.3	0.7%P
종사자수	2,931	2,962	1.0
1인당 부가가치(천원)	37,434	43,891	17.2

註: 1)생산액에서 주요생산비를 뺀 금액임.

2)생산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임.

출하액은 전년 대비 15.8%의 높은 증가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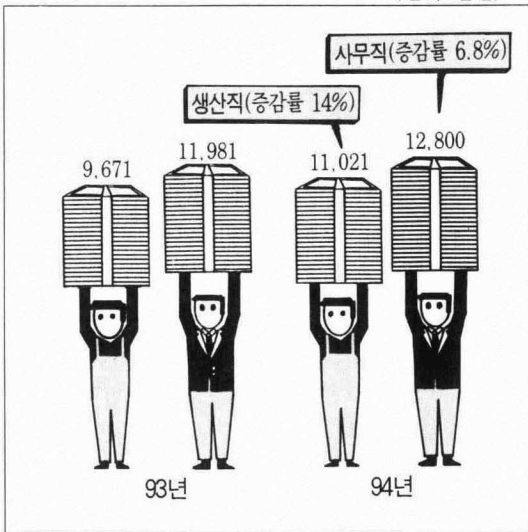
94년중 광공업 부문의 출하액은 총 296조7,090억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15.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 88~93년간의 연평균증가율 13.8%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하액을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늘어남으로써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증가를 상회하였다.

산업중분류별로는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0.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1%),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5.1%), 펄프·종이 및 종이

〈그림 2〉 연도별 인건비 비중 추이

(단위: 천원)



제품제조업(23.7%) 등이 높은 출하액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광업(-8.2%),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2.0%), 담배제조업(-1.9%),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제조업(2.4%) 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화학공업의 출하액은 210조6,850억원으로 19.1% 크게 증가하여,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69.5%에서 94년에는 71.4%로 1.9% 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94년중 출하액을 기초소재형 산업(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 등), 가공조립형산업(조립금속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생활관련형산업(음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가죽·가방·신발 등) 등 산업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제조업의 42.3%를 차지하는 가공조립형산업의 출하액이 가장 많이

증가(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는 18.5%의 큰 폭 증가

94년중 광공업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29조9,87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제조업(49.4%),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6.7%), 조립 금속제품제조업(30.1%), 사무·회계

용 기계제조업(26.5%) 등 중화학공업 관련 업종에서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4,389만1천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17.2%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화설비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94년말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업체가 보유한 유형고정자산(건설가계정 제외)은 145조 5,020억원으로, 유형고정자산투자액은 31조8,6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2.0%, 9.6%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고정자산의 증가세는 자동화 생산설비의 확충 및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이 94년중에도 꾸준히 진행되어온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수**

경 제 상 식

•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입하재료를 재고로 쌓아두지 않고 고서도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방식으로 적기 공급생산이라고도 한다. 즉,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반입, 생산·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부응할 수 있으며 기획에서 제품화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납기준수, 재고감소, 생산성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가능케 한다.

일본의 오오야(豊田)자동차사가

최초로 이 방식을 도입하여 부품관리, 생산원가 등을 대폭 절감하자 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통회사 등에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은 소량배송 빈도를 높여 교통체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저스트 인 타임 생산방식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이나 참여 부품공장들의 안정적인 생산, 엄격한 품질관리, 각 부서의 실행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김연근
국세청 민원봉사실장

■종합소득세란 무엇을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러한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부부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부분만을 주된 소득자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같은 자산소득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소득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주된 소득자가 누구인가 하는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첫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둘째,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셋째,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사람을 주된 소득자로 합니다.

다만 기재가 없거나 무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국외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일정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목적으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이때의 국외근로에는 원양어업 또는 외국항행선박, 항공기에서의 근로를 포함하나 당해 원양어업 또는 외국항행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에 한합니다.

둘째,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에서 국내근무시 받는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등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6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국

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도액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 대신 국외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원고료를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책의 저술에 따른 원고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원고료 중 사업소득은 문예·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시나 소설, 수필 또는 논문이나 평론 등의 창작물을 써 준 대가로 받는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이고, 문예·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문예창작을 하여 얻은 소득과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내에서 펴내는 사보 등에 원고를 써내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라 함은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라 함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은 그 해에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분리과세로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300만원이 넘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어떻게 과세되는지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업 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 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소득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20%를 근로소득세액 공제한 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이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이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없으나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인천에 있는 거주자가 주소지는 서울일 때, 소득세 확정신고는 서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며,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주민등록이 된 곳을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보게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거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주지 중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의 경우에는 출국일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후 그 신고한 기재사항 중 잘못 기재하였거나 빠뜨린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재사항을 고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예**

다음 호(5월호)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